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83-01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실태와 인권옹호자의 역할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실태와 인권옹호자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실태와 인권옹호자의 역할」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0.

연구수행기관 :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 상 범 (경일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허 용 (영남대학교 운동부 지도자)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I. 연구의 배경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6
II. 연구 방법 .....	9
1. 연구 방법 .....	11
III. 연구결과 .....	15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사항 .....	17
2. 학교운동부 환경 .....	24
3. 지도자 고용환경 .....	31
4. 지도자 고충 상황 .....	40
5. 지도자 인권 인식과 인권옹호자의 역할 .....	49
6. 성별/소속/임금수준(연봉)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	69
IV. 학교운동부 인권 친화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	75
1.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 .....	77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 감수성 제고 .....	79
3. 학교운동부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81

V. 요약 및 결론 .....	85
1. 요약 .....	87
2. 결론 .....	91
참고문헌 .....	92
부    록 .....	93

## 표 목차

〈표 1〉 학교운동부 지도자 현황(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 .....	3
〈표 2〉 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13
〈표 3〉 조사대상자의 성별 .....	17
〈표 4〉 조사대상자의 연령 .....	17
〈표 5〉 조사대상자의 지도 경력 .....	18
〈표 6〉 조사대상자의 소속 .....	19
〈표 7〉 조사대상자의 소속 학교 소재지 .....	20
〈표 8〉 조사대상자의 직급 .....	21
〈표 9〉 조사대상자의 지도 종목 .....	21
〈표 10〉 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 여부 .....	24
〈표 11〉 지도자 합숙소 상주 여부 .....	24
〈표 12〉 지도자 합숙소 사감 겸무 여부 .....	25
〈표 13〉 학교운동부 지원부서 여부 .....	26
〈표 14〉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의 출처 .....	27
〈표 15〉 학교운동부 지도자 담당업무 .....	28
〈표 16〉 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참여 권한 .....	29
〈표 17〉 운영 권한 제한 이유 .....	30
〈표 18〉 조사대상자의 지도자 채용형태 .....	31
〈표 19〉 조사대상자의 고용 관계 .....	32
〈표 20〉 조사대상자의 계약 기간 .....	33
〈표 21〉 조사대상자의 임금 총액 .....	33
〈표 22〉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출처 .....	34
〈표 23〉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수준 .....	35
〈표 24〉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수준이 낮은 이유 .....	36
〈표 25〉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수준이 높은 이유 .....	37
〈표 26〉 지도자 계약 시 4대 보험가입 여부 .....	38

〈표 27〉 운동부 지도자의 기타 수당 보장 여부 .....	39
〈표 28〉 학교운동부의 과열된 경쟁체계의 원인 .....	40
〈표 29〉 조사대상자 중 운영 결정권자의 갑질 경험 여부 .....	41
〈표 30〉 갑질의 주체 .....	42
〈표 31〉 갑질의 주요 내용 .....	43
〈표 32〉 갑질과 경쟁의 관련성 여부 .....	44
〈표 33〉 갑질 경험 응답자의 갑질과 인권침해의 관련성 여부 .....	45
〈표 34〉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충 .....	46
〈표 35〉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할수행을 위한 필요조건 .....	47
〈표 36〉 학교운동부 지도 중 관계에 따른 고충 .....	48
〈표 37〉 지도자로서의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할 스포츠 인권 .....	49
〈표 38〉 선수 인권의 가치 수호에 대한 노력 .....	50
〈표 39〉 선수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근절 노력 .....	50
〈표 40〉 불필요한 신체접촉 방지 노력 .....	51
〈표 41〉 언어적 폭력의 빈도 .....	52
〈표 42〉 선수들 앞에서의 음주/흡연 여부 .....	53
〈표 43〉 운동부 지도자의 학생 주의 및 관찰 여부 .....	54
〈표 44〉 선수들의 운동 외적 행동 제한 여부 .....	55
〈표 45〉 선수 고충 및 지도 상담을 위한 노력 .....	56
〈표 46〉 공정한 출전기회 제공에 대한 노력 .....	57
〈표 47〉 선수들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노력 .....	58
〈표 48〉 지도 시 선수의 인성에 대한 관심 여부 .....	59
〈표 49〉 선수 동기부여를 위한 노력 .....	60
〈표 50〉 다양한 지도방법 도입에 대한 노력 .....	61
〈표 51〉 학습권 보장에 대한 노력 .....	62
〈표 52〉 학생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 .....	63
〈표 53〉 선수와의 갈등 대처를 위한 노력 .....	64
〈표 54〉 선수와의 소통 및 선수관리에 대한 노력 .....	65
〈표 55〉 체계적 훈련을 위한 노력 .....	66

<표 56> 선수의 리더십 증진을 위한 노력 ..... 67  
 <표 57> 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재교육 참석 ..... 68  
 <표 58> 성별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독립표본 t검증 결과 ..... 69  
 <표 59> 소속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일원분산분석 결과 ..... 70  
 <표 60> 임금수준(연봉)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독립표본 t검증 결과 ..... 72

##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7
〈그림 2〉 연구모형 .....	8
〈그림 3〉 조사대상자의 성별 .....	17
〈그림 4〉 조사대상자의 연령 .....	18
〈그림 5〉 조사대상자의 지도 경력 .....	18
〈그림 6〉 조사대상자의 소속 .....	19
〈그림 7〉 조사대상자의 소속 학교 소재지 .....	20
〈그림 8〉 조사대상자의 직급 .....	21
〈그림 9〉 조사대상자의 지도 종목 .....	23
〈그림 10〉 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 여부 .....	24
〈그림 11〉 지도자 합숙소 상주 여부 .....	25
〈그림 12〉 지도자 합숙소 사감 겸무 여부 .....	25
〈그림 13〉 학교운동부 지원부서 여부 .....	26
〈그림 14〉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의 출처 .....	27
〈그림 15〉 학교운동부 지도자 담당업무 .....	28
〈그림 16〉 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참여 권한 .....	29
〈그림 17〉 운영 권한 제한 이유 .....	30
〈그림 18〉 조사대상자의 지도자 채용 형태 .....	31
〈그림 19〉 조사대상자의 고용관계 .....	32
〈그림 20〉 조사대상자의 계약 기간 .....	33
〈그림 21〉 조사대상자의 임금 총액 .....	34
〈그림 22〉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출처 .....	35
〈그림 23〉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수준 .....	36
〈그림 24〉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수준이 낮은 이유 .....	37
〈그림 25〉 지도자 계약 시 4대 보험가입 여부 .....	38
〈그림 26〉 운동부 지도자의 기타 수당 보장 여부 .....	39
〈그림 27〉 학교운동부의 과열된 경쟁체계의 원인 .....	40

〈그림 28〉 조사대상자 중 운영 결정권자의 갑질 경험 여부 .....	41
〈그림 29〉 갑질의 주체 .....	42
〈그림 30〉 갑질의 주요 내용 .....	43
〈그림 31〉 갑질과 경쟁의 관련성 여부 .....	44
〈그림 32〉 갑질 경험 응답자의 갑질과 인권침해의 관련성 여부 .....	45
〈그림 33〉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충 .....	46
〈그림 34〉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할수행을 위한 필요조건 .....	47
〈그림 35〉 학교운동부 지도 중 관계에 따른 고충 .....	48
〈그림 36〉 지도자로서의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할 스포츠 인권 .....	49
〈그림 37〉 선수 인권의 가치 수호에 대한 노력 .....	50
〈그림 38〉 선수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근절 노력 .....	51
〈그림 39〉 불필요한 신체접촉 방지 노력 .....	52
〈그림 40〉 언어적 폭력의 빈도 .....	53
〈그림 41〉 선수들 앞에서의 음주/흡연 여부 .....	53
〈그림 42〉 운동부 지도자의 학생 주의 및 관찰 여부 .....	54
〈그림 43〉 선수들의 운동 외적 행동 제한 여부 .....	55
〈그림 44〉 선수 고충 및 지도 상담을 위한 노력 .....	56
〈그림 45〉 공정한 출전기회 제공에 대한 노력 .....	57
〈그림 46〉 선수들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노력 .....	58
〈그림 47〉 지도 시 선수의 인성에 대한 관심 여부 .....	59
〈그림 48〉 선수 동기부여를 위한 노력 .....	60
〈그림 49〉 다양한 지도방법 도입에 대한 노력 .....	61
〈그림 50〉 학습권 보장에 대한 노력 .....	62
〈그림 51〉 학생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 .....	63
〈그림 52〉 선수와의 갈등 대치를 위한 노력 .....	64
〈그림 53〉 선수와의 소통 및 선수관리에 대한 노력 .....	65
〈그림 54〉 체계적 훈련을 위한 노력 .....	66
〈그림 55〉 선수의 리더십 증진을 위한 노력 .....	67
〈그림 56〉 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재교육 참석 .....	68
〈그림 57〉 학교운동부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도식 .....	82



---

---

# I

---

## 연구의 배경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학교 운동부 코치들, 최저생계비도 못 받는다

김경호 선임기자 [jerome@kyunghyang.com](mailto:jerome@kyunghya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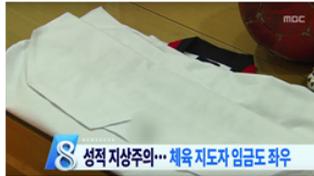
### "학교 운동부지도자 재계약 협박, 비정규직 줄세우기?"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정규직전환심의회 '운동부지도자 결정 보류 부당' 지적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마치 운동부지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대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다.

도내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통한 예방법이나 일선 학교 운동부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계획이나 예방 대책의 언급도 없었다.



성직 지상주의... 체육 지도자 임금도 죄우

HOME > 뉴스 > 스포츠

### 순회코치 정규직 전환 가능할까

김주희기자 승인 2007.06.27 22:27 댓글 0

## 가. 학교운동부 지도자

2019년 7월 현재 대한체육회 소속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남자 11,935명, 여자 2,806명, 총 14,7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엘리트 스포츠 현장에서 학생지도뿐만 아니라 진학 및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1〉 학교운동부 지도자 현황(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대학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743	1,056	3,799	3,426	863	4,289	2,903	450	3,353	981	120	1,101	11,935	2,806	14,741

## 나.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문제 인식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는 엘리트 스포츠 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인권 친화적 운동부 문화를 선도할 인권옹호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엘리트 스포츠 현장에서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 2019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쇼트트랙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가 오랜 시간 코치로부터 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려왔음을 폭로하면서 대중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함은주, 2019).

이처럼 엘리트스포츠 현장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도자와 선수의 불평등한 관계가 꾸준히 지목되고 있다. 현재의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에서 지도자는 선수들의 경기출전, 진학, 취업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갑과 을'의 불평등한 관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특정지도자가 지닌 인권의식의 흠결과 같은 개인적 문제와 극단적인 권위주의, 남성 위주의 스포츠문화 등과 같은 한국스포츠의 구조적 문제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도자 역시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학교 담당자와 불평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상당수 학교에서 학부모 후원금이 활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도자와 학부모 간 불평등한 권력 관계 형성의 가능성이 있다. 즉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부정적 일탈의 주동자 혹은 가해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나 그들에게도 고용불안, 성적에 대한 압박, 불평등한 권력 관계 등에 대한 고충이 있는 것이다.

## 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2년 각 급 학교에서 시작된 체육특기자 정책은 학생운동선수의 기량에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며, 이는 1988년 서울올림픽 종합 4위를 시작으로 국제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갖추는데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였다(이명훈, 이근모, 이남미, 2003). 하지만 이원화된 구조의 학교체육은 소수의 국가대표 엘리트를 양성하여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은 높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배움의 시기에 학습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부상이나 경기력 부족으로 운동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중도포기의 학생선수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김택천, 2007).

이에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실태가 밝혀지고,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2007년 국가

인권위원회의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0년 12월 6일 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 권고 등에 의해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간한 인권보고서 29집에 특집으로 스포츠 인권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그 내용에는 2014년도 스포츠인권 현황 및 주요 사건, 프로스포츠 인권관련 제도현황 및 주요 사건, 스포츠인권 관련 법제·정책 현황 및 평가 등의 내용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특히 스포츠폭력과 성폭력문제가 인권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스포츠인권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로 대두되었다(김현수, 2017).

이 과정에서 스포츠인권 침해의 주체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18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체적/언어적/정서적/의사결정폭력뿐만 아니라 강간의 주요 가해 주체로 지도자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운동부의 문제를 지적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스포츠계에서 권력 관계의 중심부에 있는 운동부 지도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스포츠계에서 인권의 문제를 구조적 측면에서 주목한다면, 운동부 지도자의 문제행동을 야기했던 또 다른 불평등 구조는 없는지, 인권옹호자의 역할과 관계는 없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삶과 그에 대한 고충들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성적 부담에 따른 부당한 압력 혹은 학교 담당자, 학부모 등으로부터 갑질 횡포를 당한 적은 없는지 등을 파악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며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도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학교운동부의 구조적 모순에 놓인 한 개인으로서 운동부 지도자의 고충을 조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 뿐 비인권적 행동을 자행한 지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가.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 학교운동부 지도자 현황

운동부 지도자란 넓은 의미에서 코치(coach)의 별칭으로서, 감독과 코치, 트레이너 등 분화된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직업분류표에서 '경기감독과 코치'는 엄연히 하나의 직업으로 되어있다. 한국직업분류에 의한 코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수의 기량을 평가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둘째, 시합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팀이나 상대 팀의 전략을 평가·분석하며, 셋째, 가르칠 운동기술의 시범을 보여주면서 선수를 개인 또는 집단으로 지도하고, 넷째, 유능한 선수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련 경기에 참여한다. 이러한 운동부 지도자는 흔히 경기지도자라고도 칭하며, 그중,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부 지도자들을 학교운동부 지도자라고 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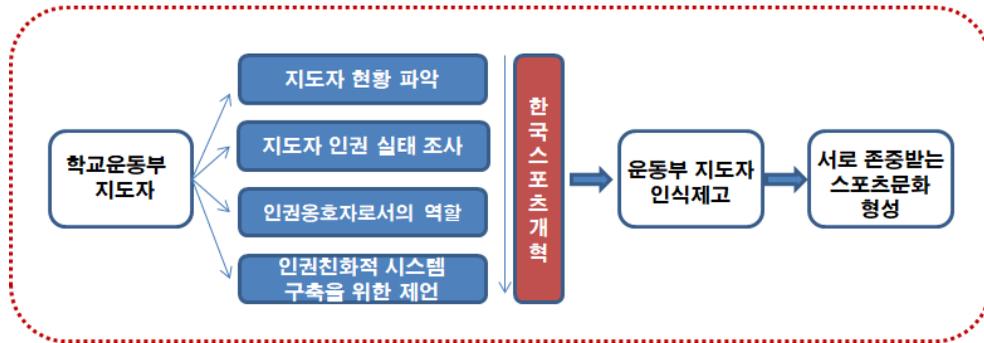
그리고 법령에서도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경기지도자란 용어로 '운동경기부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코치란 용어를 사용하고, 단 체육 교사가 지도할 경우는 운동부 감독이라고 부르며, 고용된 지도자는 운동부 코치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다시 순회코치(혹은 전담 코치)와 일반 코치로 구분된다. 순회코치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장과 고용계약을 한 코치이며, 순회코치 중에는 시·도체육회의 코치가 극소수 포함되어 있다. 일반 코치란 학교장과 계약을 하나 학부모가 실제로 임금을 주는 코치를 말한다.

####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초등/중등/고등/대학의 운동부 지도자로 종사하면서 겪고 있는 고충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종사하고 있는 14,741명 중 성별, 종목별, 지역별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설문 문항에는 성적 부담 등으로 인한 부당한 압력을 당한 적은 없는지, 학부모를 비롯해 학교 담당자로부터 갑질 횡포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적은 없는지, 재계약을 조건으로 금전적인 부담을 느낀 적은 없는지 등의 내용과 함께 인권옹호자로서 역할에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도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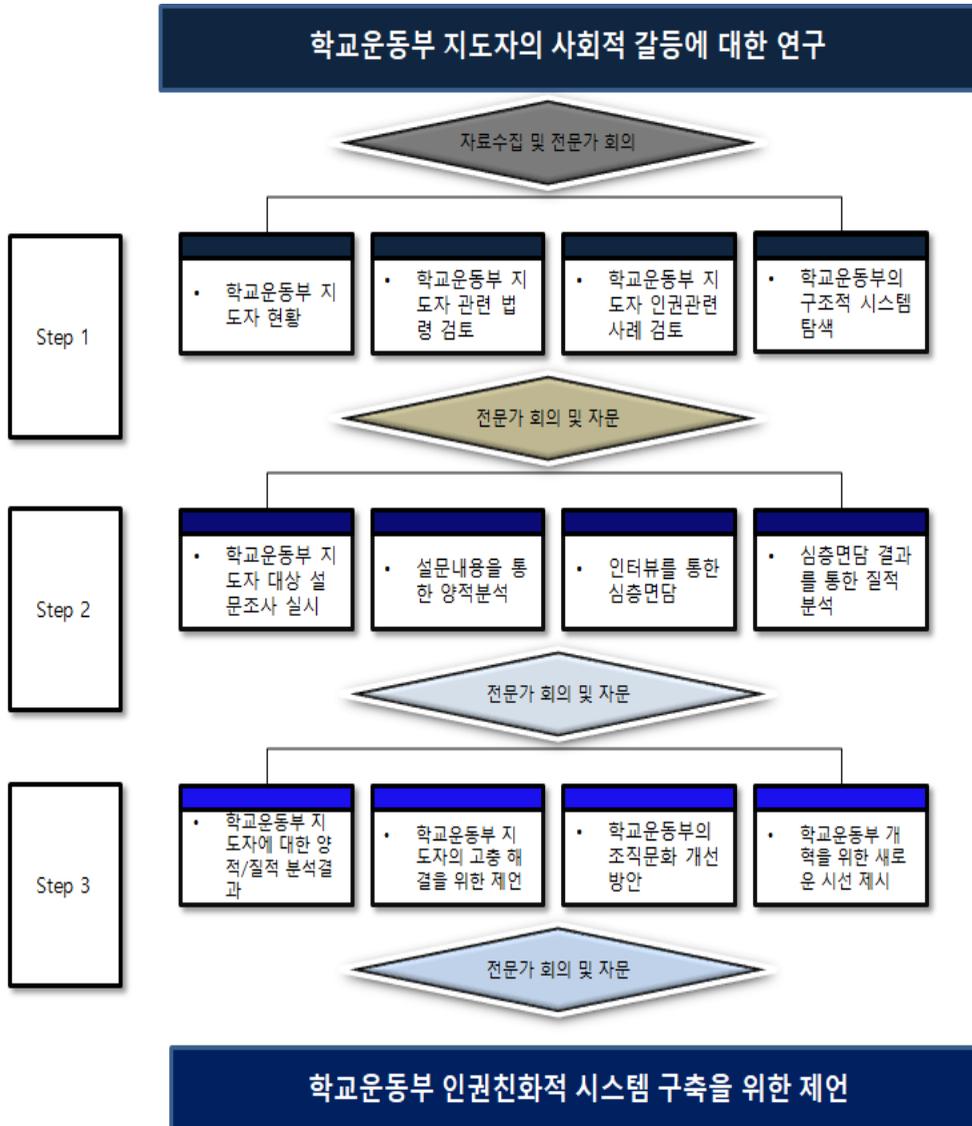
○ 학교운동부 인권 친화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현재 대한민국은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스포츠 개혁을 위한 동력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인권 친화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깃들어서 있다.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한 비인권적 행태에 대해 일부 인권의식에 흠결 있는 지도자의 탓만으로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학교운동부는 선수-지도자-학부모-학교관계자 등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토대로 운동부 지도자 역시 사회구조에 속해있는 한 개인으로서 느끼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검토하고, 인권 친화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스포츠문화를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나. 연구모형



〈그림 2〉 연구모형

---

---

## II

---

### 연구 방법

---



# 1. 연구 방법

## 가. 연구 방법

### ○ 문헌 조사

본 연구에서는 주제와 관련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기술적 자료(descriptive data)의 체계적 분석과정인 문헌연구를 이용하였다. 문헌연구는 주제의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전형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며 관련 주제의 선행연구들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연구법이다. 따라서 중심이 되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관련 문헌들과 논문 등을 포괄적으로 수집한 후, 내용별로 분류작업을 실시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논의를 기존의 연구들과 연계되는 수준에서 논리적 배열과 검토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 ○ 설문조사

문헌고찰을 통해 설문의 틀을 결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 조사 내용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학교운동부의 일반적 환경과 지도자의 고용환경, 지도자 고충 상황, 지도자 인권 인식과 인권옹호자의 역할 등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세부 문항 구성을 위해 대한체육회(2012)에서 개발한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선수지도 매뉴얼』과 송남석(2016)이 개발한 설문지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현재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 3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세부 문항을 구성하였다. 1:1 개별면접을 통해 질문을 제시한 후 응답한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그를 통한 주요 키워드와 문항 등을 도출하여 최종 46문항을 완성하였다. 구체적인 심층 면담의 질문은 아래와 같다.

- ① 학교운동부 환경 확인을 위한 확인사항은?
- ② 학교운동부의 환경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 ③ 지도자 고용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 ④ 지도자 고용환경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 ⑤ 지도자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인가?

- ⑥ 지도자의 고충 해결을 위한 사항은 무엇인가?
- ⑦ 지도자와 선수 인권이 가장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 것?
- ⑧ 현장에서 인권보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개발된 설문지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의 협조를 받아 확보된 초, 중, 고, 대학교 지도자의 명단 중 오류 및 중복된 전화번호를 제외한 유효한 휴대전화번호 17,165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무작위 추출법(random sampling)을 통해 2차례에 걸쳐 6,000명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전문기관(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2019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된 518개의 데이터가 모두 분석에 활용되었다.

#### ○ 심층 면담

심층 면담은 설문지 내용 구성을 위한 1차 면담과 주요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면담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1차 면담은 9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였고, 2차 면담은 연구결과가 도출된 후인 10월 말에 실시하였다. 연구진에서 심층 면담 진행에 있어 준수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기간 및 예산을 고려하여 직접 면담을 우선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직접 면담이 어려운 경우는 전화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둘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양적 연구결과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평소 인권 친화적 운동부 환경조성에 힘쓴 지도자를 위주로 섭외하였다.

셋째, 종목별로 적절한 인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대상자의 남녀 성비가 약 4대1인 점을 고려하여 면담 대상자의 성비도 그에 맞추었다.

2차 면담은 연구책임자와 현직 운동부 지도자인 공동연구원이 진행하였으며, 상호 간의 라포형성(Rapport building)이 되어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시작하여 반 구조화된 면담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면담은 1회 60분으로 진행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였다. 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면담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표 2〉 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순서	이름	성별	소속	종목	나이	지도경력
1	A	남	중학교	야구	40대	17년
2	B	남	대학교	축구	40대	9년
3	C	남	초등학교	씨름	40대	14년
4	D	남	고등학교	육상	40대	16년
5	E	여	중학교	농구	30대	8년



---

### III

---

## 연구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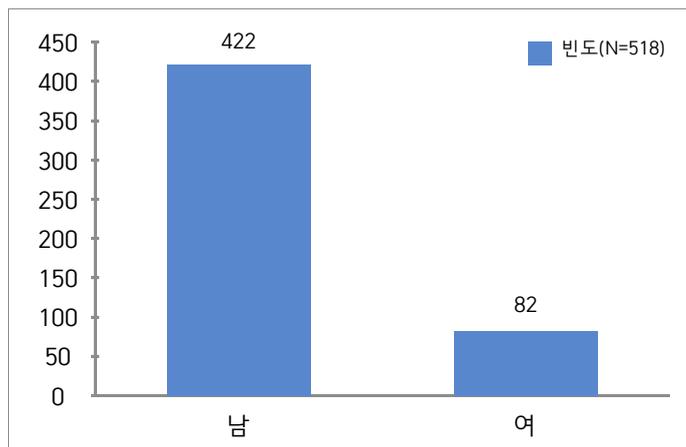


#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사항

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표 3〉 조사대상자의 성별

성별	빈도(N=518)	비율
남	422	81.5%
여	82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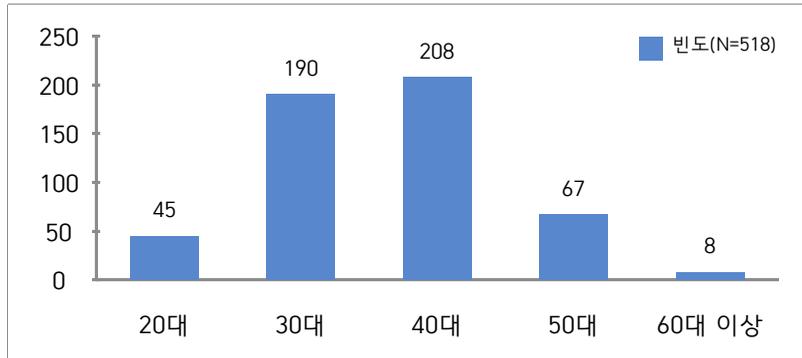
〈그림 3〉 조사대상자의 성별

□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422명(81.5%), 여자 96명(18.5%)으로 나타났다.

Q2.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표 4〉 조사대상자의 연령

연령	빈도(N=518)	비율
20대	45	8.7
30대	190	36.7
40대	208	40.2
50대	67	12.9
60대 이상	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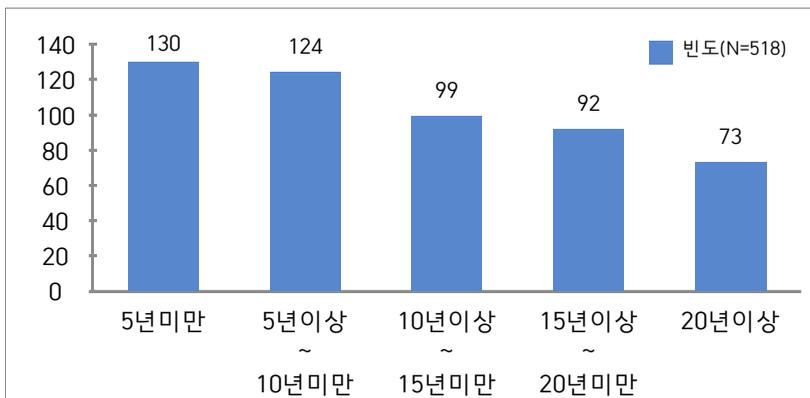
〈그림 4〉 조사대상자의 연령

-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대 45명(8.7%), 30대 190명(36.7%), 40대 208명(40.2%), 50대 67명(12.9%), 60대 이상 8명(1.5%)으로 나타났다.

Q3. 협회에 최초로 등록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귀하의 지도 경력은?

〈표 5〉 조사대상자의 지도 경력

지도자 경력	빈도(N=518)	비율
5년 미만	130	25.1
5년 이상 ~ 10년 미만	124	23.9
10년 이상 ~ 15년 미만	99	19.1
15년 이상 ~ 20년 미만	92	17.8
20년 이상	73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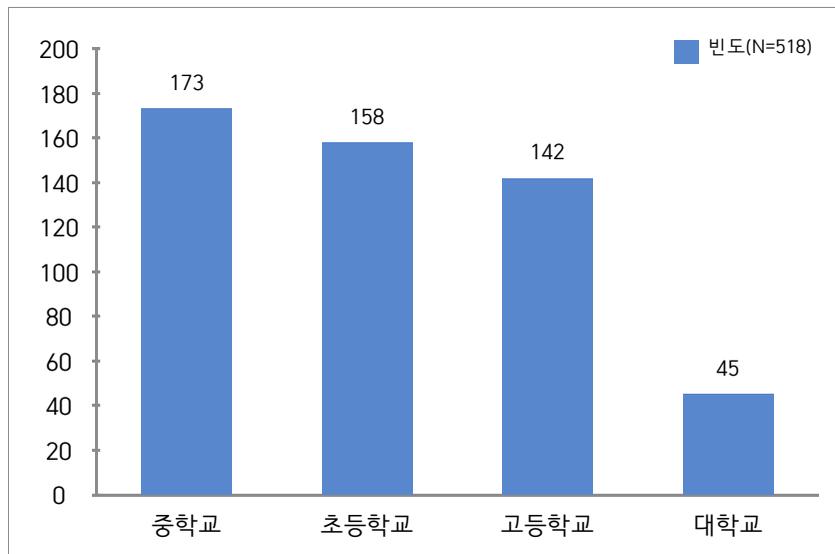
〈그림 5〉 조사대상자의 지도 경력

- 조사대상자의 지도 경력은 5년 미만 130명(25.1%), 5년 이상-10년 미만 124명(23.9%), 10년 이상-15년 미만 99명(19.1%), 15년 이상-20년 미만 92명(17.8%), 20년 이상 73명(14.1%)으로 나타났다.

Q4. 귀하는 현재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표 6〉 조사대상자의 소속

소속	빈도(N=518)	비율
중학교	173	33.4
초등학교	158	30.5
고등학교	142	27.4
대학교	45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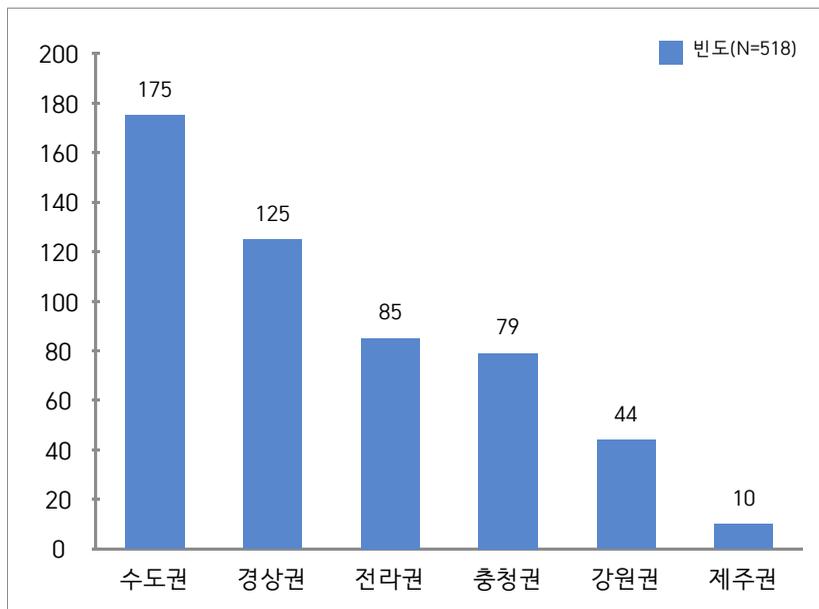
〈그림 6〉 조사대상자의 소속

- 조사대상자의 소속은 초등학교 158명(30.5%), 중학교 173명(33.4%), 고등학교 142명(27.4%), 대학교 45명(8.7%)으로 나타났다.

Q5. 귀하의 소속 학교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표 7〉 조사대상자의 소속 학교 소재지

학교 소재지	빈도(N=518)	비율
수도권	175	33.8
경상권	125	24.1
전라권	85	16.4
충청권	79	15.3
강원권	44	8.5
제주권	1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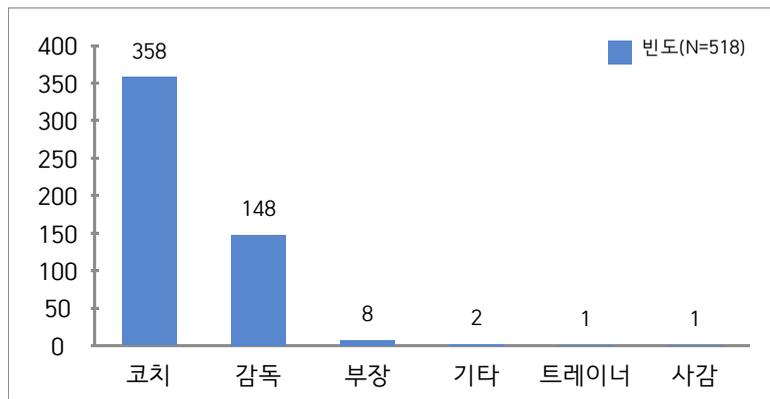
〈그림 7〉 조사대상자의 소속 학교 소재지

- 조사대상자의 소속 학교 소재지는 수도권 175명(33.8%), 강원권 44명(8.5%), 충청권 79명(15.3%), 전라권 85명(16.4%), 경상권 125명(24.1%), 제주권 10명(1.9%) 순으로 나타났다.

Q6.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표 8〉 조사대상자의 직급

직급	빈도(N=518)	비율
코치	358	69.1
감독	148	28.6
부장	8	1.5
기타	2	0.4
트레이너	1	0.2
사감	1	0.2



〈그림 8〉 조사대상자의 직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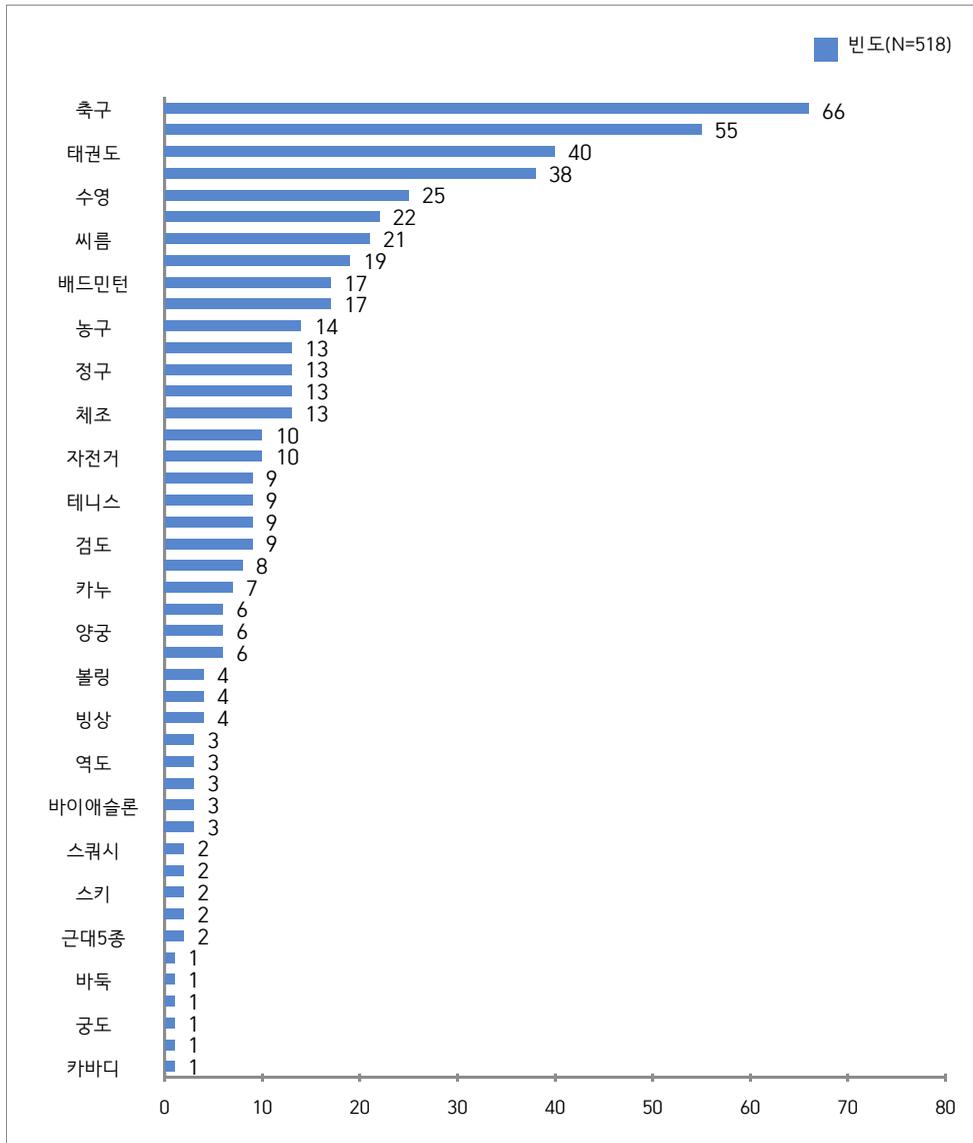
- 조사대상자의 직급은 부장 8명(1.5%), 감독 148명(28.6%), 코치 358명(69.1%), 트레이너 1명(0.2%), 사감 1명(0.2%), 기타 2명(0.4%)으로 나타났다.

Q7. 귀하의 지도 종목은 무엇입니까?

〈표 9〉 조사대상자의 지도 종목

지도 종목	빈도(N=518)	비율
축구	66	12.7
육상	55	10.6
태권도	40	7.7
야구/소프트볼	38	7.3
수영	25	4.8
사격	22	4.2

지도 종목	빈도(N=518)	비율
씨름	21	4.1
탁구	19	3.7
배드민턴	17	3.3
유도	17	3.3
농구	14	2.7
핸드볼	13	2.5
정구	13	2.5
배구	13	2.5
체조	13	2.5
펜싱	10	1.9
자전거	10	1.9
레슬링	9	1.7
테니스	9	1.7
복싱	9	1.7
검도	9	1.7
하키	8	1.5
카누	7	1.4
롤러스포츠	6	1.2
양궁	6	1.2
조정	6	1.2
볼링	4	0.8
아이스하키	4	0.8
빙상	4	0.8
기타	3	0.6
역도	3	0.6
우슈	3	0.6
바이애슬론	3	0.6
럭비	3	0.6
스쿼시	2	0.4
골프	2	0.4
스키	2	0.4
컬링	2	0.4
근대5종	2	0.4
철인3종	1	0.2
바둑	1	0.2
에어로빅	1	0.2
궁도	1	0.2
요트	1	0.2
카바디	1	0.2



〈그림 9〉 조사대상자의 지도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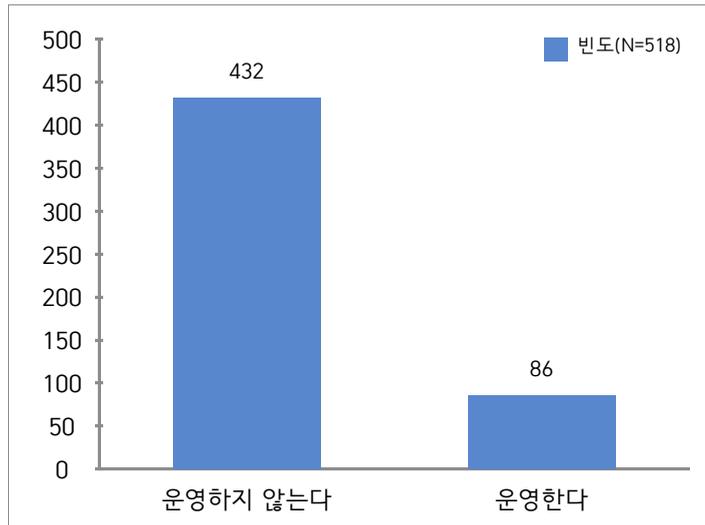
□ 조사대상자의 지도 종목은 축구 66명(12.7%), 육상 55명(10.6%), 태권도 40명(7.7%), 야구/소프트볼 38명(7.3%) 순으로 나타났다.

## 2. 학교운동부 환경

Q8. 학교운동부는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표 10〉 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 여부

합숙소 운영 여부	빈도(N=518)	비율
운영하지 않는다	432	83.4
운영한다	86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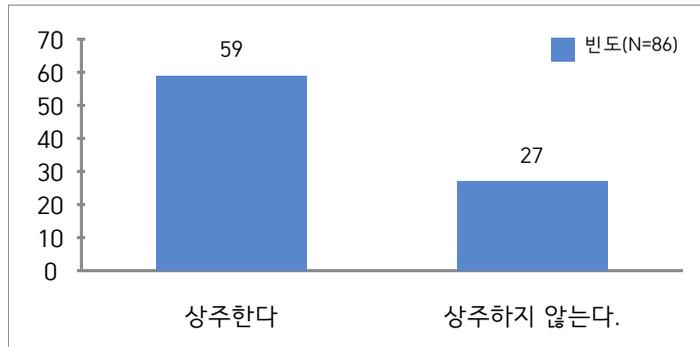
〈그림 10〉 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 여부

- 조사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운동부 중 합숙소를 운영하는 곳이 86곳(16.6%), 운영하지 않는 곳이 432곳(83.4%)으로 나타났다.

Q8-1. (8=1)지도자가 합숙소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표 11〉 지도자 합숙소 상주 여부

합숙소 상주 여부	빈도(N=86)	비율
상주한다	59	68.6
상주하지 않는다	27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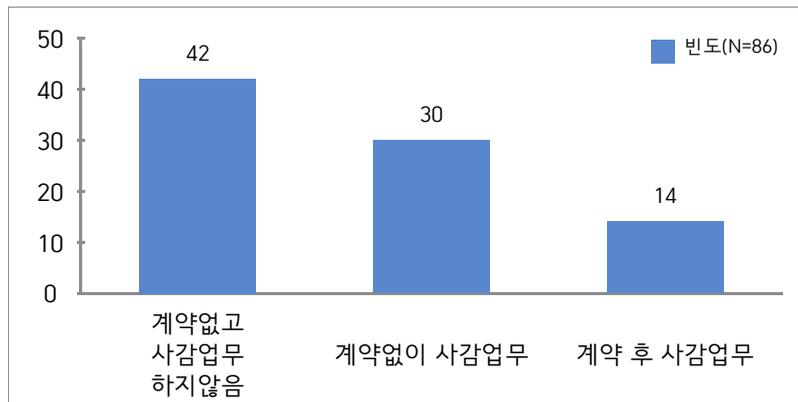
〈그림 11〉 지도자 합숙소 상주 여부

□ 조사대상자 중 합숙소를 운영하는 학교운동부에서 합숙소에 상주하고 있는 지도자가 59명(68.6%), 상주하지 않는 지도자가 27명(31.4%)으로 나타났다.

Q8-2. (8=2)운동부 지도자가 합숙소 사감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까?

〈표 12〉 지도자 합숙소 사감 겸무 여부

지도자 사감 겸무	빈도(N=86)	비율
사감으로 계약되지도 않았고, 사감의 업무도 하지 않는다.	42	48.8
합숙소 사감으로 계약되어있지는 않지만, 사감의 업무를 겸하고 있다.	30	34.9
합숙소 사감으로 계약해서, 지도와 사감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14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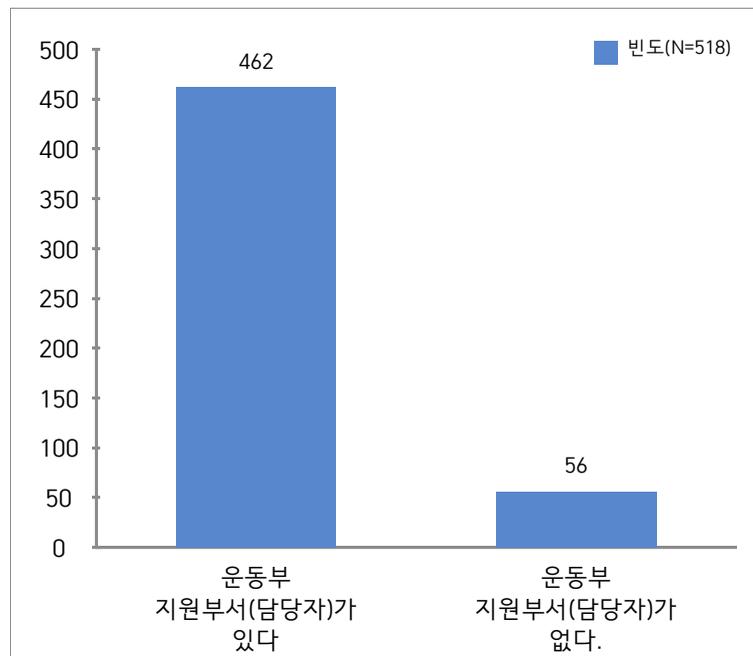
〈그림 12〉 지도자 합숙소 사감 겸무 여부

- 조사대상자 중 합숙소를 운영하는 학교운동부에서 사감으로 계약되지도 않았고, 사감 업무도 하지 않는 지도자가 42명(48.8%), 합숙소 사감으로 계약되어있지는 않지만 사감의 업무를 겸하고 있는 지도자가 30명(34.9%), 합숙소 사감으로 계약해서 지도와 사감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가 14명(16.3%)으로 나타났다.

Q9. 학교운동부는 지원부서(담당자)가 있습니까?

〈표 13〉 학교운동부 지원부서 여부

운동부 지원부서	빈도(N=518)	비율
운동부 지원부서(담당자)가 있다.	462	89.2
운동부 지원부서(담당자)가 없다.	56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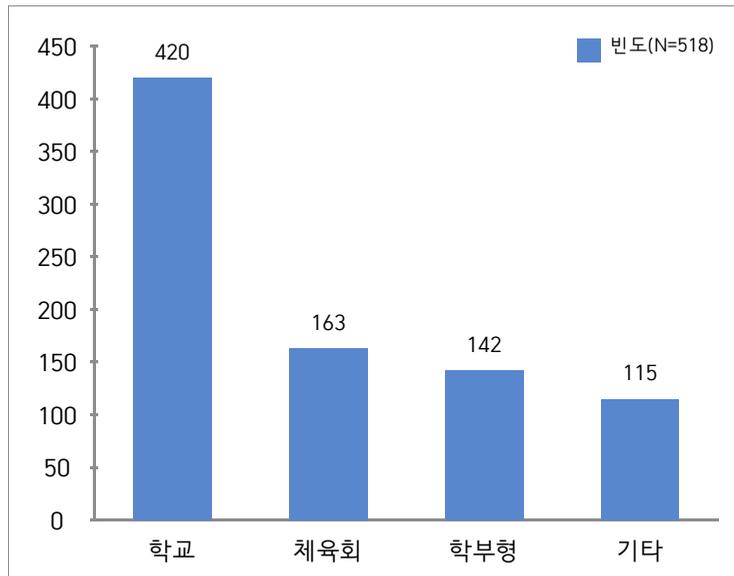
〈그림 13〉 학교운동부 지원부서 여부

- 조사대상자 소속된 학교운동부에서 운동부 지원부서(담당자)가 있는 곳이 462곳(89.2%), 운동부 지원부서(담당자)가 없는 곳이 56곳(10.8%)으로 나타났다.

Q10.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예산의 출처는 어디입니까?(중복선택)

〈표 14〉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의 출처

운동부 예산 출처	빈도(N=518)	비율
학교	420	81.1
체육회	163	31.5
학부형	142	27.4
기타	115	22.2



〈그림 14〉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의 출처

□ 조사대상자 소속된 학교운동부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출처로는 학교, 체육회, 학부형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의견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스포츠협의회, 지역후원회, 프로그라운드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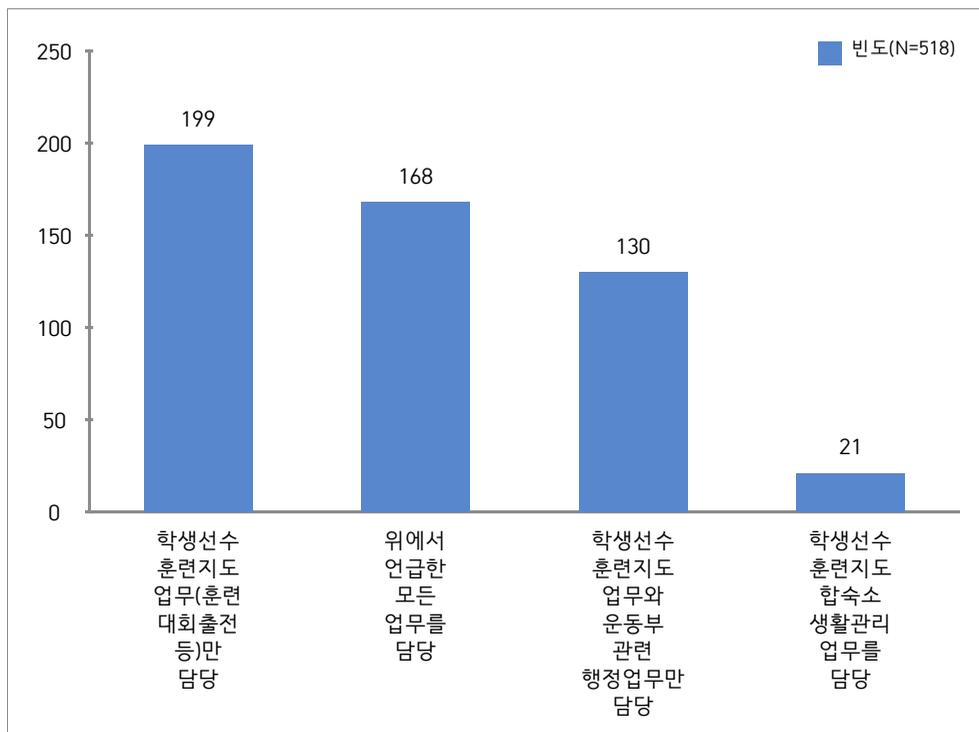
■ 기타 의견

- 교육청, 시청, 지자체, 군청, 구청
- 대학운동부, 협회, 대학스포츠협의회, 연맹
- 구단, 클럽, 지역후원회
- 유도 동문, 감독 자비 등

### Q11.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표 15〉 학교운동부 지도자 담당업무

지도자 담당업무	빈도(N=518)	비율
학생선수 훈련지도 업무(훈련, 대회출전 등)만 담당	199	38.5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업무를 담당	168	32.5
학생선수 훈련지도 업무와 운동부 관련 행정업무만 담당	130	25.0
학생선수 훈련지도, 합숙소 생활관리 업무를 담당	21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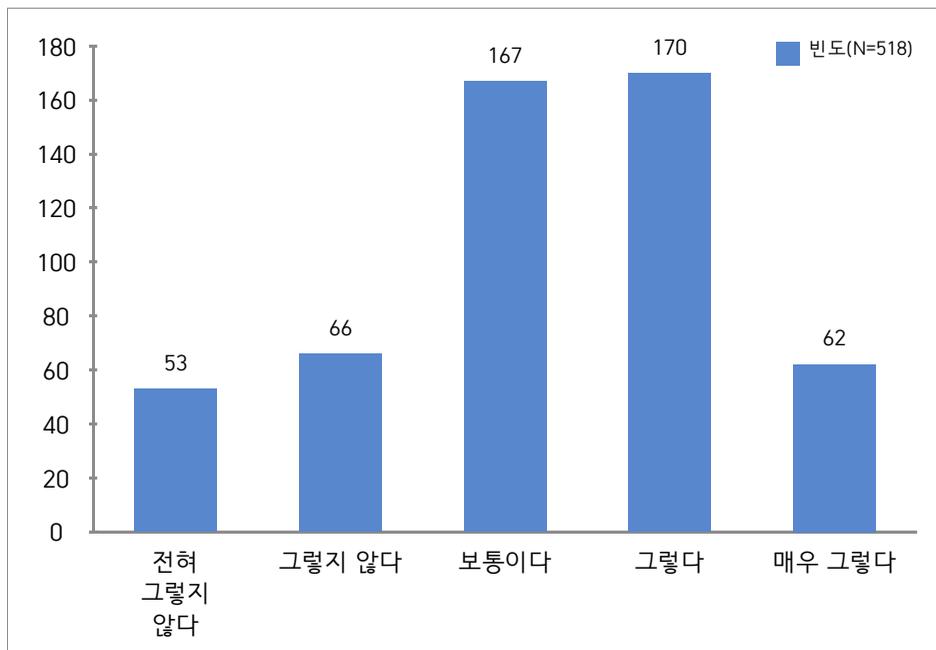
〈그림 15〉 학교운동부 지도자 담당업무

-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 학생선수 훈련지도 업무만 담당한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199명(38.5%), 학생선수 훈련지도 업무와 운동부 관련 행정업무만 담당한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130명(25.0%), 학생선수 훈련지도, 합숙소 생활관리 업무를 담당한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21명(4.1%),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168명(32.5%)으로 나타났다.

Q12.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 등의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표 16〉 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참여 권한

지도자 권한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3	10.2
그렇지 않다	66	12.7
보통이다	167	32.2
그렇다	170	32.8
매우 그렇다	6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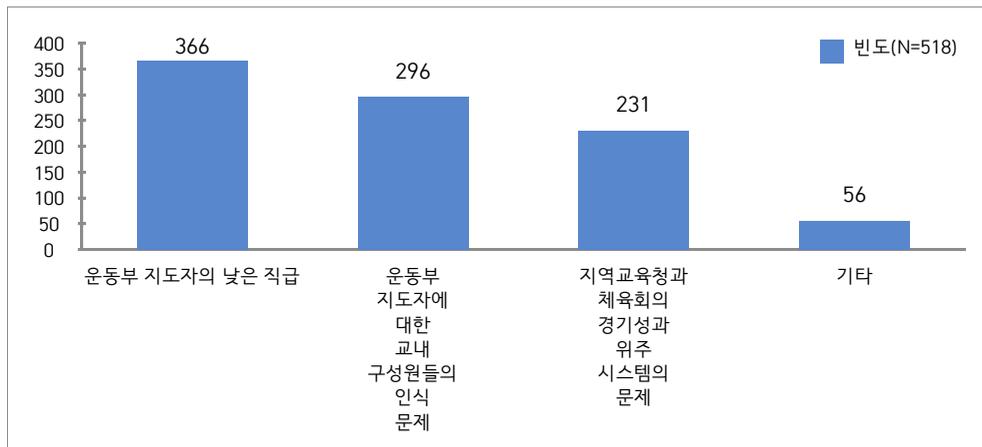
〈그림 16〉 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참여 권한

-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참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70명(32.8%),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 167명(32.2%) 순으로 응답하여 대체로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12-1. (12=1,2)지도자의 운영 권한이 제한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선택)

〈표 17〉 운영 권한 제한 이유

권한 제한 이유	빈도(N=518)	비율
운동부 지도자의 낮은 직급	366	70.6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교내 구성원들의 인식 문제	296	57.1
지역교육청과 체육회의 경기성과 위주 시스템의 문제	231	44.5
기타	56	10.9



〈그림 17〉 운영 권한 제한 이유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운영 권한이 제한된 이유에 대해서 운동부 지도자의 낮은 직급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366명(70.6%),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교내 구성원들의 인식 문제라 응답한 지도자가 296명(57.1%), 지역교육청과 체육회의 경기성과 위주 시스템의 문제라 응답한 지도자가 231명(44.5%)으로 나타났다.

■ 기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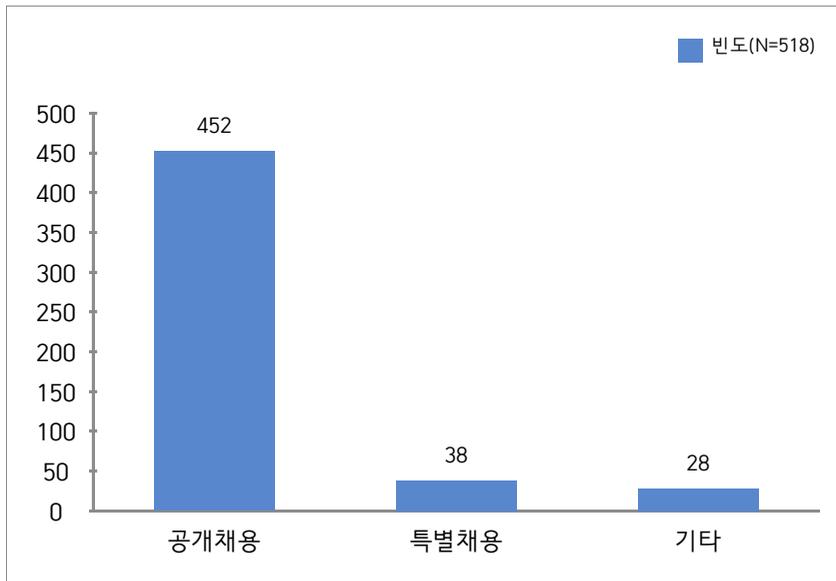
- 학교 구성원들의 갑질, 단장님의 갑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야구부장 행세를 하고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코치가 있음, 갑을 관계(운동부는 무조건 메달을 따야 한다는 생각), 교장 선생님의 독단적 행동,
- 예산집행에 따른 책임소재로 인한 지도자 배제, 직권남용, 책임 문제 및 비정규직 문제, 체육회 소속이라 학교 행정에 관여하지 못함, 그 외 시스템 문제 등

### 3. 지도자 고용환경

Q13. 지도자 채용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표 18〉 조사대상자의 지도자 채용형태

채용형태	빈도(N=518)	비율
공개채용	452	87.3
특별채용	38	7.3
기타	28	5.4



〈그림 18〉 조사대상자의 지도자 채용 형태

□ 조사대상자의 지도자 채용형태는 공개채용이 452명(87.3%), 특별채용이 38명(7.3%), 기타 28명(5.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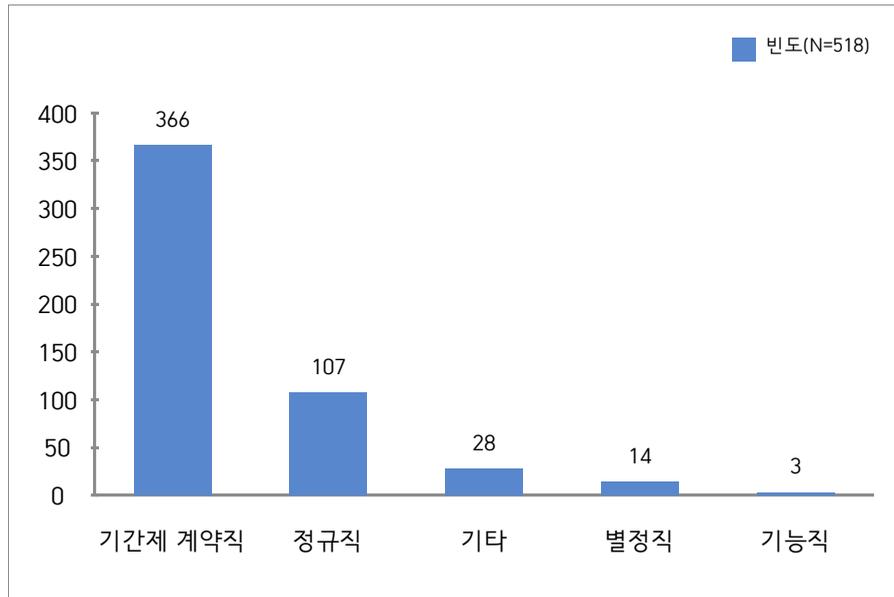
■ 기타 의견

- 인맥, 계약 없이 선후배 소개, 추천, 은사님 추천, 학부모 선택, 체육회 연결
- 자원봉사, 재능기부
- 개인 사설 등

Q14. 현재 본인의 고용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표 19〉 조사대상자의 고용 관계

고용 관계	빈도(N=518)	비율
기간제 계약직	366	70.7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107	20.7
기타	28	5.4
별정직	14	2.7
기능직	3	0.6



〈그림 19〉 조사대상자의 고용관계

□ 조사대상자의 고용 관계로는 기간제 계약직 366명(70.7%),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107명(20.7%), 기타 28명(5.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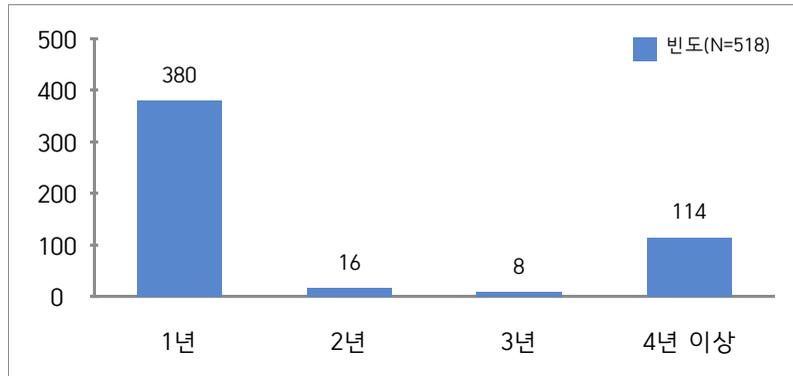
■ 기타 의견

- 교원, 겸무, 학부모 채용
- 계약한 적 없음, 무기계약, 무보수
- 기부활동, 봉사직 등

Q15. 본인의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표 20〉 조사대상자의 계약 기간

계약 기간	빈도(N=518)	비율
1년	380	73.4
2년	16	3.1
3년	8	1.5
4년 이상	11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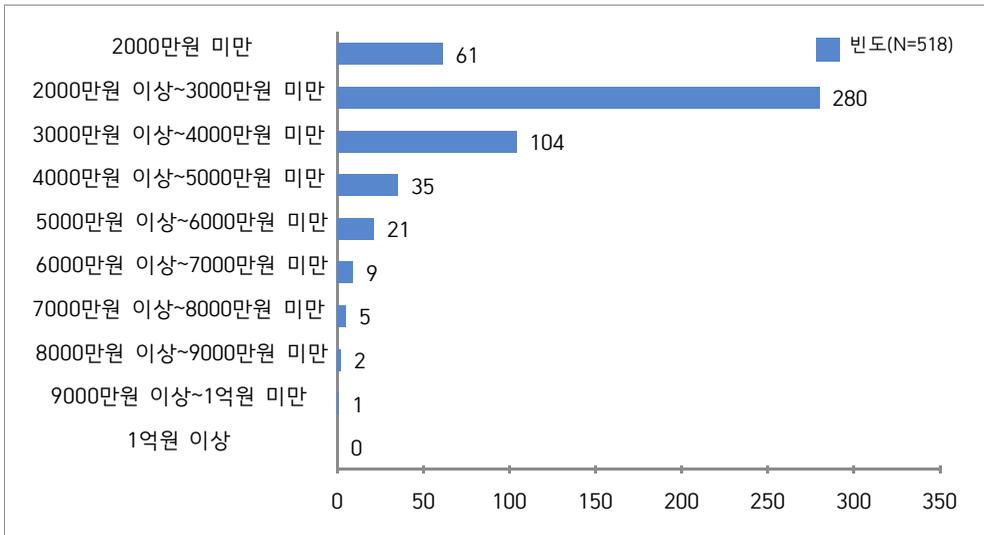
〈그림 20〉 조사대상자의 계약 기간

- 조사대상자의 계약 기간으로 '1년'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380명(73.4%), '4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14명(22%), '2년'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6명(3.1%) 순으로 나타났다.

Q16. 임금(연봉) 총액은 얼마입니까?

〈표 21〉 조사대상자의 임금 총액

임금 총액	빈도(N=518)	비율
2,000만원 미만	61	11.8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80	54.1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104	20.1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35	6.8
5,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21	4.1
6,0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9	1.7
7,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5	1.0
8,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	2	0.4
9,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	0.2
1억원 이상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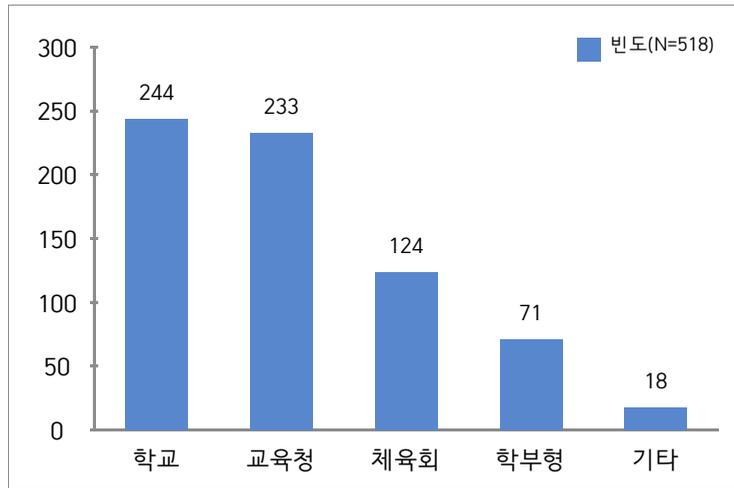
〈그림 21〉 조사대상자의 임금 총액

□ 조사대상자의 임금(총액)이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80명(54.1%),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04명(20.1%), 2,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61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임금 총액의 교차분석 결과 여성지도자와 남성지도자의 임금총액 분포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지도자가 남성지도자보다 임금 총액에 있어 3,000만원 미만이라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속에 따라서도 임금 총액 분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소속 지도자가 상급학교 소속 지도자보다 임금 총액에 있어 3,000만원 미만이라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Q17. 임금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중복선택)

〈표 22〉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출처

임금의 출처	빈도(N=518)	비율
학교	244	47.1
교육청	233	45
체육회	124	23.9
학부형	71	13.7
기타	18	3.5



〈그림 22〉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출처

□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출처에 대해 학교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44명(47.1%), 교육청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33명(45%), 체육회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24명(23.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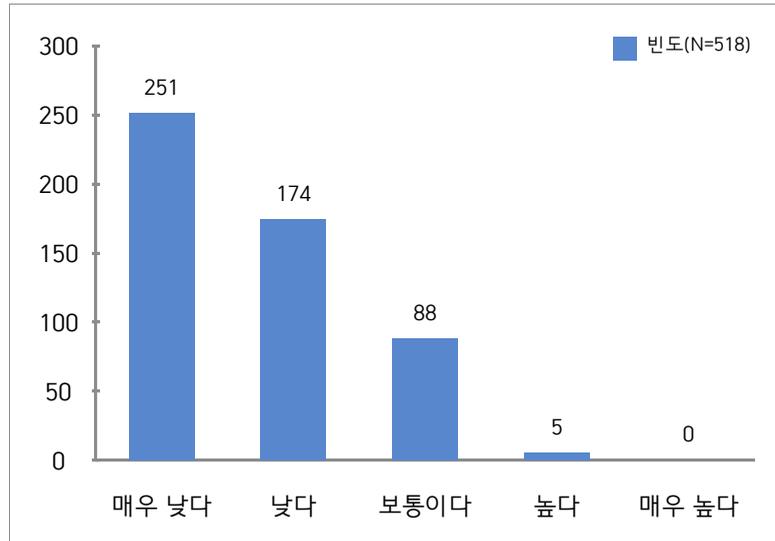
■ 기타 의견

- 구단(프로구단), 시청, 지역후원회
- 지도자, 방과 후 수업
- '잘 모름' 등

Q18. 지도자의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23〉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수준

임금 수준	빈도(N=518)	비율
매우 낮다	251	48.5
낮다	174	33.6
보통이다	88	17.0
높다	5	1.0
매우 높다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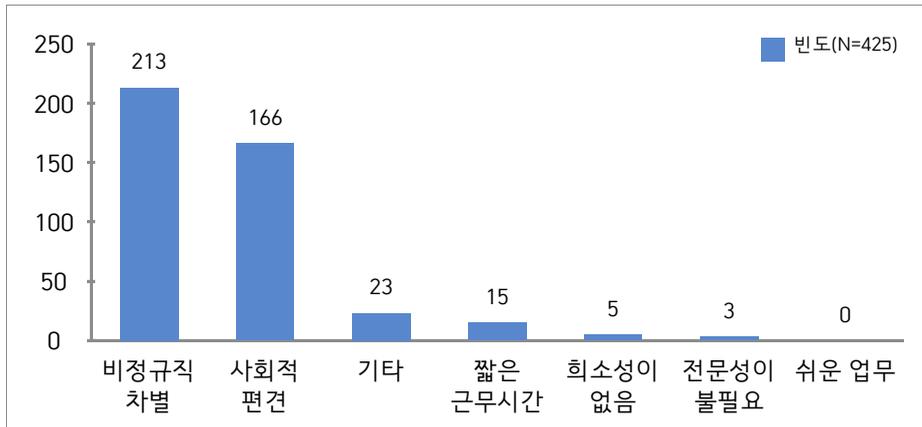
〈그림 23〉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수준

-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수준에 대해 매우 낮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251명(48.5%), 낮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174명(33.6%), 보통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88명(17%) 순으로 나타났다.

Q18-1. (18=1,2)지도자의 임금 수준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24〉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수준이 낮은 이유

임금 수준이 낮은 이유	빈도(N=425)	비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213	50.1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166	39.1
기타	23	5.4
실제 근무시간이 짧아서	15	3.5
희소성이 없어서	5	1.2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3	0.7
업무가 쉬워서	0	0



〈그림 24〉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수준이 낮은 이유

□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13명(50.1%),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66명(39.1%), 그 외 기타 의견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3명(5.4%)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의견

- 초과근무 및 출장비 지급이 없어서, 예산문제, 지원 부족, 단장님의 사고방식, 학부모 후원비에 의존한 한정적 운영방식, 학부모 지출의 한계, 교육청 책정금액 낮음
- 급여를 많이 올려주면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하는 체육회 간부, 불평을 말하지 못하는 관행, 지방에 대한 차별
- 업무의 특성을 이해해주지 않음,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음

Q18-2. (18=4,5)지도자의 임금 수준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25〉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수준이 높은 이유

임금 수준이 높은 이유	빈도(N=5)	비율
하루 종일 학생들의 운동지도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서	1	20
체육회, 학부모 등의 보조가 있어서	1	20
업무(스카웃, 훈련지도, 취업 등)의 복잡성	1	20
희소성이 있어서	1	20
전문성이 필요해서	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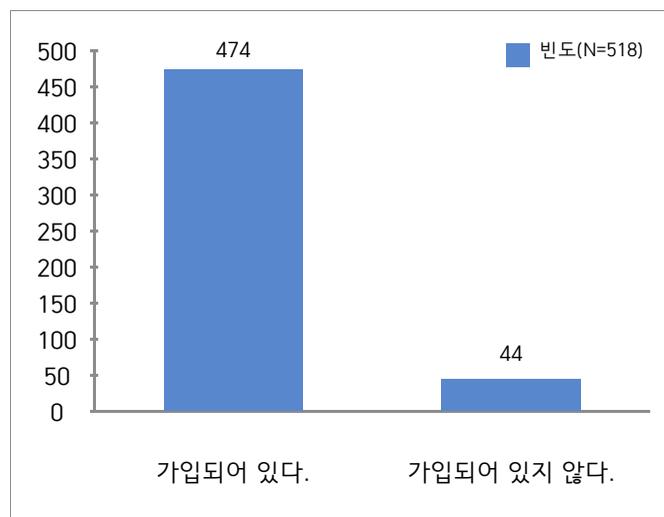
■ 임금 수준이 높은 이유

-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지도자(5명, 1.0%)가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음
  - 하루 종일 학생들의 운동지도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서
  - 체육회, 학부형 등의 임금 보조가 있어서
  - 업무(스카우트, 훈련지도, 취업 등)의 복잡성 때문
  - 희소성이 있어서
  - 전문성이 필요해서

Q19. 지도자는 계약 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표 26〉 지도자 계약 시 4대 보험가입 여부

4대 보험 가입여부	빈도(N=518)	비율
가입되어 있다.	474	91.5
가입되어 있지 않다.	44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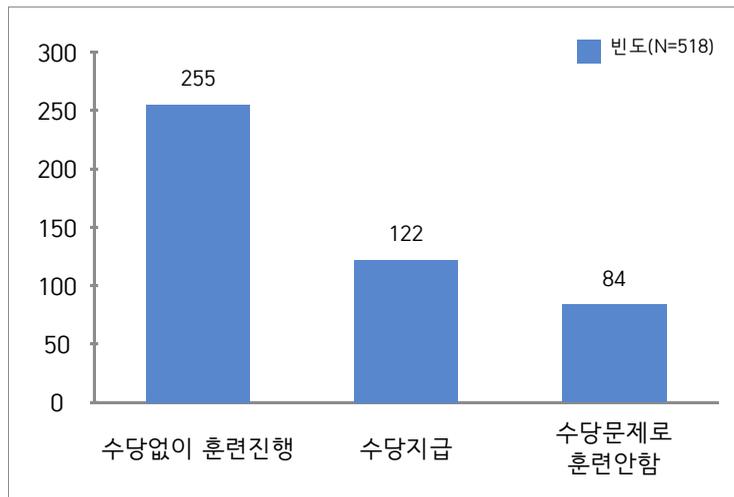
〈그림 25〉 지도자 계약 시 4대 보험가입 여부

- 조사대상자 중 계약 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474명(91.5%),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44명(8.5%)으로 나타났다.

Q20. 지도자의 기타 수당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표 27〉 운동부 지도자의 기타 수당 보장 여부

기타 수당 보장	빈도(N=518)	비율
수당 지급 없이 주말훈련 및 야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55	49.2
주말훈련, 야간훈련 등으로 인한 추가 수당을 모두 지급 받고 있다.	122	23.6
수당문제로 인하여 주말훈련, 야간훈련 등을 승인되지 않아서 훈련을 진행하지 않는다.	84	16.2



〈그림 26〉 운동부 지도자의 기타 수당 보장 여부

□ 운동부 지도자의 기타 수당 보장 여부에 대해 수당 없이 주말 및 야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255명(49.2%), 주말 및 야간훈련으로 인한 기타 수당을 받는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122명(23.6%), 수당문제로 주말 및 야간훈련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84명(16.2%)으로 나타났다.

■ 기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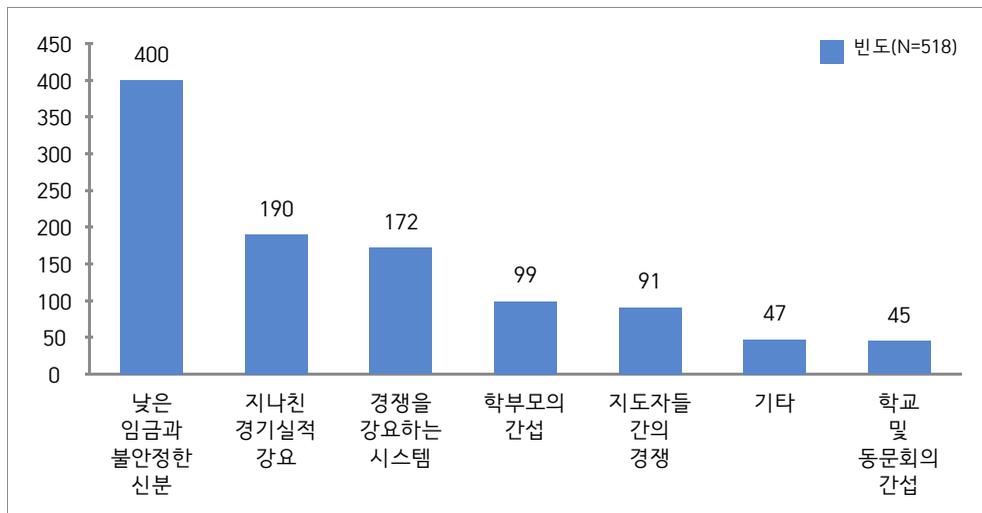
- 최근에 초과수당 제도가 생겼으나 아직 받지 못했음, 대회 출전 시에는 받지 못함
- 수당이 있으나 적절히 보장받지 못함
- 연봉에 수당이 포함, 방과 후 활동, 예산에 따라 다름
- 수당에 맞게 주말 및 야간훈련을 하지 않음, 탄력적 근무, 대체휴무 활용

## 4. 지도자 고충 상황

Q21. 학교운동부 상황에서 과열된 경쟁체계의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선택)

〈표 28〉 학교운동부의 과열된 경쟁체계의 원인

과열된 경쟁체계의 요인	빈도(N=518)	비율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	400	77.2
지나친 경기실적 강요	190	36.7
훈련비 지원, 포상금 지급 등 경쟁을 강요하는 시스템의 문제	172	33.2
지도와 훈련에 대한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99	19.1
지도자들 간의 경쟁	91	17.6
기타	47	9.1
지도와 훈련에 대한 학교 및 동문회의 지나친 간섭	45	8.7



〈그림 27〉 학교운동부의 과열된 경쟁체계의 원인

-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학교운동부 상황에서 과열된 경쟁체계의 원인으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400명(77.2%), 지나친 경기실적 강요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90명(36.7%), 경쟁을 강요하는 시스템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72명(33.2%),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라 응답한 지도자가 99명(19.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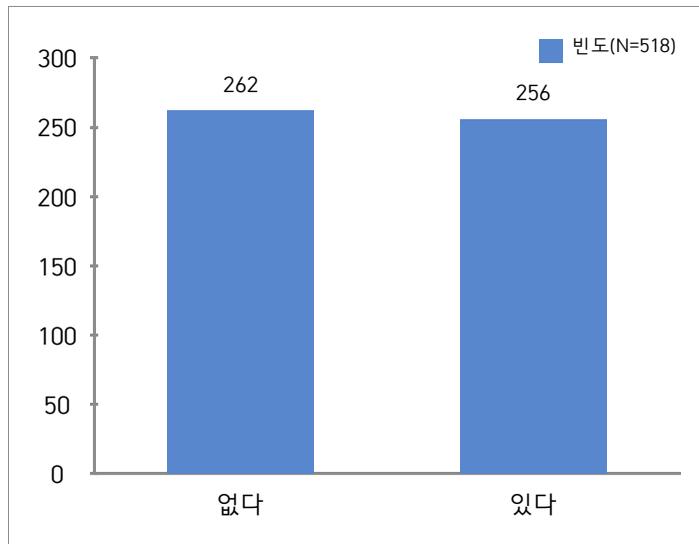
■ 기타 의견

- 한정된 일자리 대비 지도자 포화(저출산 문제), 중학교 진학문제, 선수수급, 대입요건 충족, 불공정한 대입제도, 대회 참여 기회 축소
-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없는 사람의 계약 문제
- 현재를 과열된 경쟁체제로 보지 않음, 승패를 가리는 스포츠에서 경쟁은 필수 등

Q22.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결정권자의 권위로 인한 피해, 즉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표 29〉 조사대상자 중 운영 결정권자의 갑질 경험 여부

갑질 경험 여부	빈도(N=518)	비율
없다	262	50.6
있다	256	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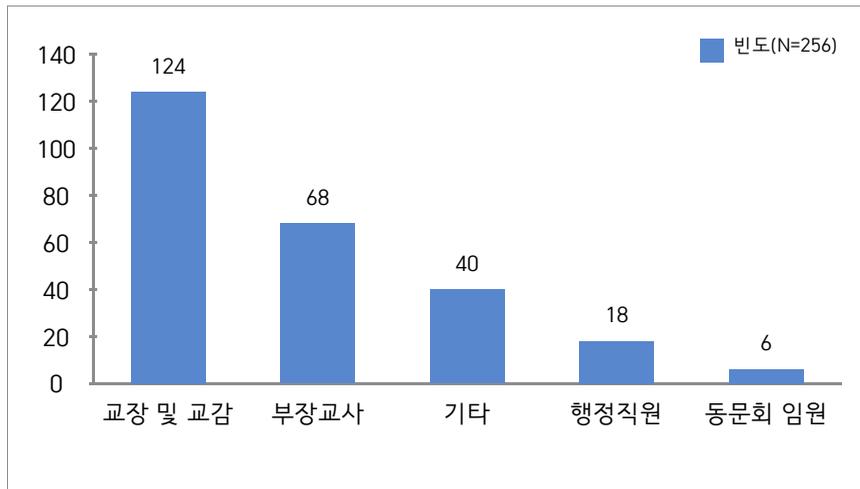
〈그림 28〉 조사대상자 중 운영 결정권자의 갑질 경험 여부

- 조사대상자 중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결정권자의 권위로 인한 피해, 즉 갑질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262명(50.6%), 있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256명(49.4%)으로 나타났다.

Q22-1. (22=1)본인에게 갑질한 사람은 주로 누구입니까?

〈표 30〉 갑질의 주체

갑질 주체	빈도(N=256)	비율
교장 및 교감	124	48.4
각 종목 부장교사(지도교사)	68	26.6
기타	40	15.6
행정실장 등 행정직원	18	7
동문회 임원	6	2.3



〈그림 29〉 갑질의 주체

□ 갑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지도자 중에서 갑질한 주체로 ‘교장 및 교감’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24명(48.4%), ‘각 종목 부장교사’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68명(26.6%), ‘체육 회와 학부모 등의 기타 의견’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40명(15.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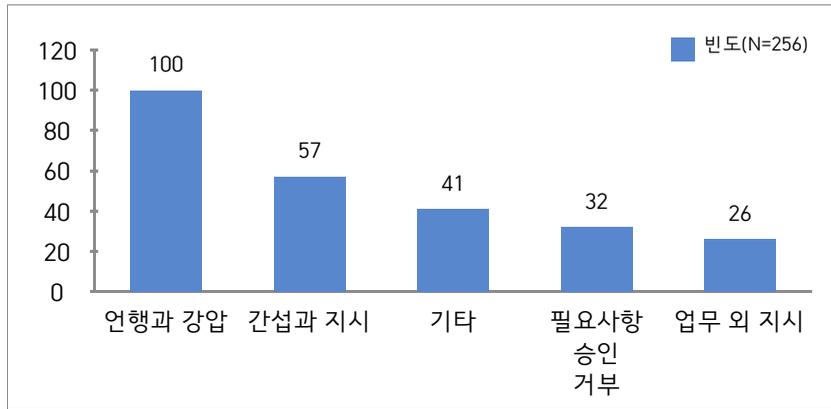
■ 기타 의견

- 체육회 담당 직원, 단장
- 학부모 간섭
- 부장교사가 아닌 일반 체육 교사, 다른 종목 부장교사, 교학과 교수 등

Q22-2. (22=1)본인이 경험한 갑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표 31〉 갑질의 주요 내용

갑질 내용	빈도(N=256)	비율
직업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언행과 강압	100	39.1
훈련내용, 시간, 방법 등에 대한 간섭과 지시	57	22.3
기타	41	16.0
주말훈련 등 필요사항에 대한 승인 거부	32	12.5
훈련 및 지도 업무 외 행사, 업무 지시	26	10.2



〈그림 30〉 갑질의 주요 내용

□ 갑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지도자 중 갑질의 주요 내용으로 직업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언행과 강압이라 응답한 지도자가 100명(39.1%), 훈련내용, 시간, 방법 등에 대한 간섭과 지시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57명(22.3%), 기타 의견으로 응답한 지도자가 41명(1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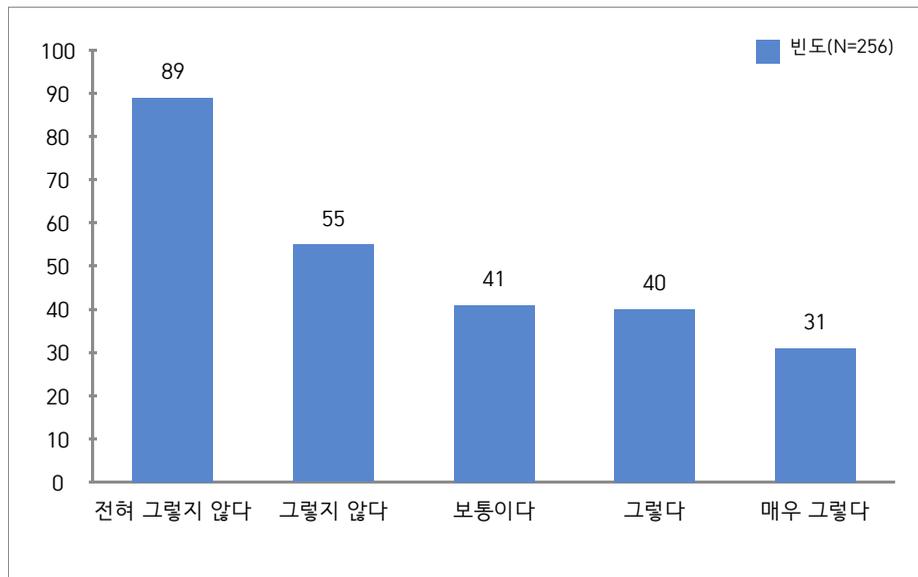
■ 기타 의견

- 대회참가신청서에 직인을 찍어주지 않고, 소년체전에서 입상해도 현수막을 걸어주지 않는 등의 갑질, 대회 출전 금지, 근무시간 조정 거부, 부장의 업무까지 부담, 학교행사 참여 강요
- 사생활 간섭, 자녀 출전문제, 회식, 노래방 등 강요
- 훈련과 경기에서 아이들을 훈계, 훈련간섭
- 운동부 지도자라 하여 반사회적 혹은 잠재적 문제를 가진 사람일 것이라는 인식에서 오는 감정적 피해,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함 등

Q22-3. (22=1)본인이 경험한 갑질이 경쟁을 더욱 강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2〉 갑질과 경쟁의 관련성 여부

갑질과 경쟁의 관련성	빈도(N=256)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89	34.8
그렇지 않다	55	21.5
보통이다	41	16.0
그렇다	40	15.6
매우 그렇다	31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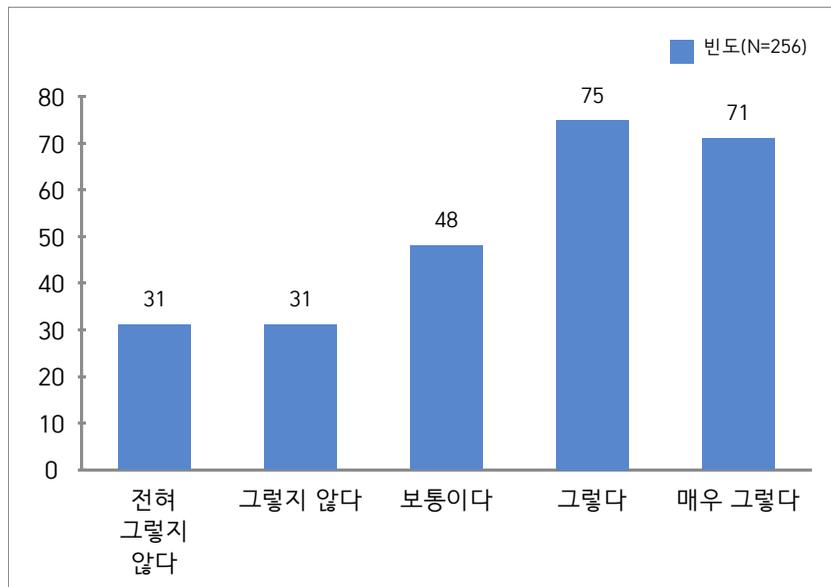
〈그림 31〉 갑질과 경쟁의 관련성 여부

- 본인이 경험한 갑질이 경쟁을 더욱 강화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89명(34.8%),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55명(21.5%), '보통'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41명(16%)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Q22-4. (22=1)본인이 경험한 갑질이 선수들의 인권침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33〉 갑질 경험 응답자의 갑질과 인권침해의 관련성 여부

갑질과 인권침해의 관련성	빈도(N=256)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1	12.1
그렇지 않다	31	12.1
보통이다	48	18.8
그렇다	75	29.3
매우 그렇다	71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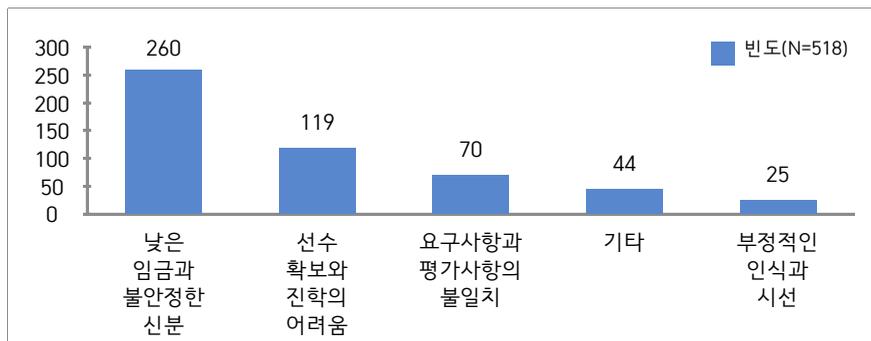
〈그림 32〉 갑질 경험 응답자의 갑질과 인권침해의 관련성 여부

- 본인이 경험한 갑질이 선수들의 인권침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75명(29.3%),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71명,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48명(18.8%)으로 나타났다.

Q23. 학교운동부 지도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표 34〉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충

지도자 고충	빈도(N=518)	비율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	260	50.2
선수 확보와 진학의 어려움	119	23.0
요구사항과 평가사항의 불일치	70	13.5
기타	44	8.5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시선	25	4.8



〈그림 33〉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충

□ 학교운동부 지도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이라 응답한 지도자가 260명(50.2%)으로 가장 많았고, 선수 확보와 진학의 어려움이라 응답한 지도자가 119명(23%), 요구사항과 평가사항의 불일치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70명(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금수준(총액)에 따른 지도자 고충의 교차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수준이 낮은 지도자일수록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을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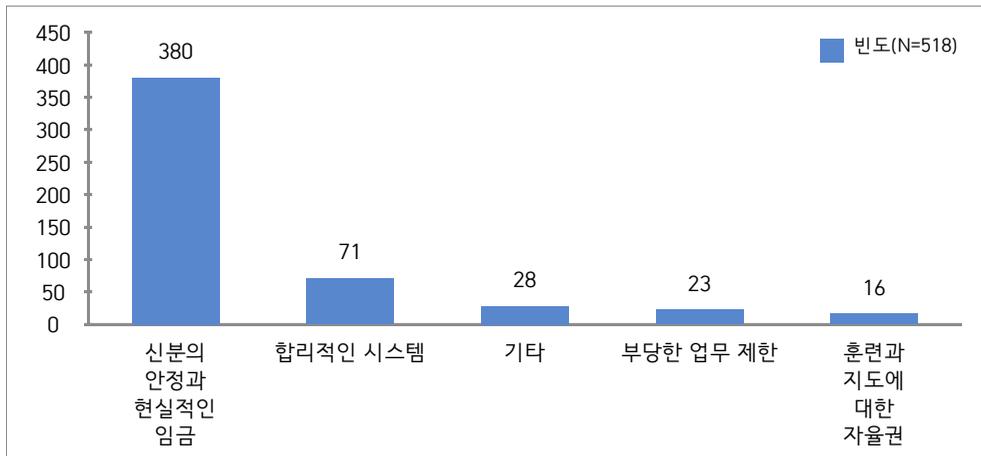
■ 기타 의견

- 학부모들의 간섭과 억압, 조직의 위계에 의한 불합리한 행정 및 업무 처리의 절차 문제, 학교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성적보다 성장을 중요시하라고 요구하고서는 성적으로 평가
- 가르친 학생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 똑같이 열악한 처우에 놓일 것 같은 불안함
- 교권 추락, 지나친 감시, 개인 시간 부족
- 교육부 정책

Q24.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35〉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할수행을 위한 필요조건

지도자 역할 수행을 위한 필요조건	빈도(N=518)	비율
신분의 안정과 현실적인 임금 지급	380	73.4
공정한 경쟁구조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	71	13.7
기타	28	5.4
지도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 외 업무부여를 제한	23	4.4
훈련과 지도에 대한 자율권 보장	16	3.1



〈그림 34〉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할수행을 위한 필요조건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신분의 안정과 현실적인 임금이라 응답한 지도자가 380명(73.4%), 공정한 경쟁구조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이라 응답한 지도자가 71명(13.7%), 기타 의견이 28명(5.4%)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금수준(총액)에 따른 지도자 역할 수행을 위한 필요조건의 교차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수준이 낮은 지도자일수록 신분의 안정과 현실적인 임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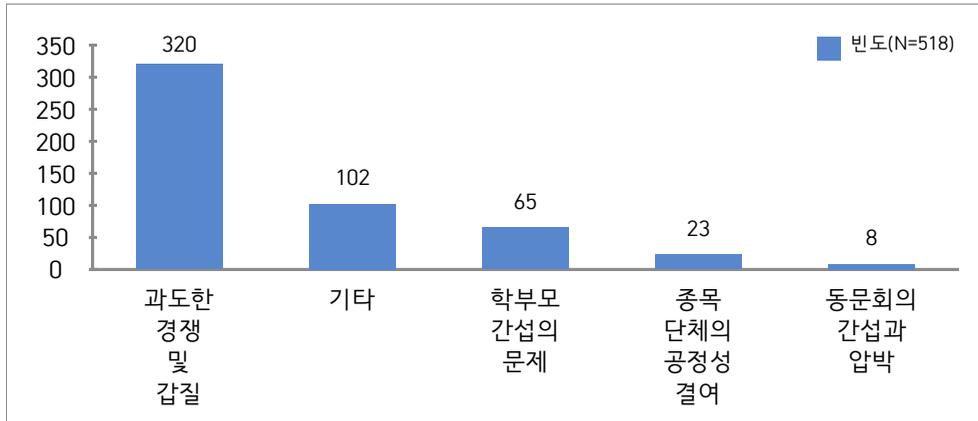
■ 기타 의견

- 훈련도 교육으로 인정이 필요, 운동부 인식 개선
- 지도자의 안정적 계약조건 보장, 지도자 권한 확대

Q25. 학교운동부를 지도하면서 관계하게 되는 단체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표 36〉 학교운동부 지도 중 관계에 따른 고충

관계에 따른 고충	빈도(N=518)	비율
현재 훈련비 지원시스템으로 인한 경쟁과도 현상 및 갑질 유발 현상	320	61.8
기타	102	19.7
임금의 출처가 학부모로 인한 운영 간섭의 문제	65	12.5
해당 종목 단체의 부적절한 관행에 의한 공정성 결여 문제	23	4.4
동문회의 운영 간섭과 압박	8	1.5



〈그림 35〉 학교운동부 지도 중 관계에 따른 고충

□ 학교운동부를 지도하면서 관계하게 되는 단체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과도한 경쟁 및 갑질 유발 현상이라 응답한 지도자가 320명(61.8%), 기타 의견을 제시한 지도자가 102명(19.7%), 임금의 출처가 학부모로 인한 운영 간섭의 문제라 응답한 지도자가 65명(12.5%) 등으로 나타났다.

■ 기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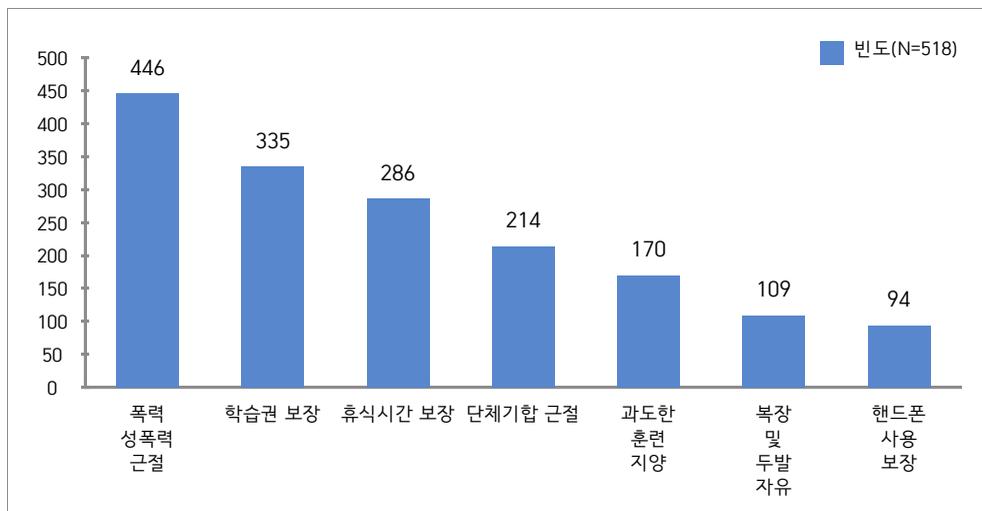
- 상급 학교 지도자의 월권
- 비 인기종목 예산 부족, 운동부 해체에 대한 가능성
- 학교와 교육청의 의견 불일치, 학교관계자들의 무관심과 냉대
- 인권에 대한 인식
- 불공정한 판정문제 등

## 5. 지도자 인권 인식과 인권옹호자의 역할

Q26. 지도자로서 선수에게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할 스포츠 인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선택)

〈표 37〉 지도자로서의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할 스포츠 인권

스포츠 인권	빈도(N=518)	비율
폭력 및 성폭력 근절	446	86.1
학습권 보장	335	64.7
휴식시간 보장	286	55.2
단체 기합 근절	214	41.3
과도한 훈련 지양	170	32.8
선수 복장 및 두발 자유 보장	109	21.0
핸드폰 사용 보장	94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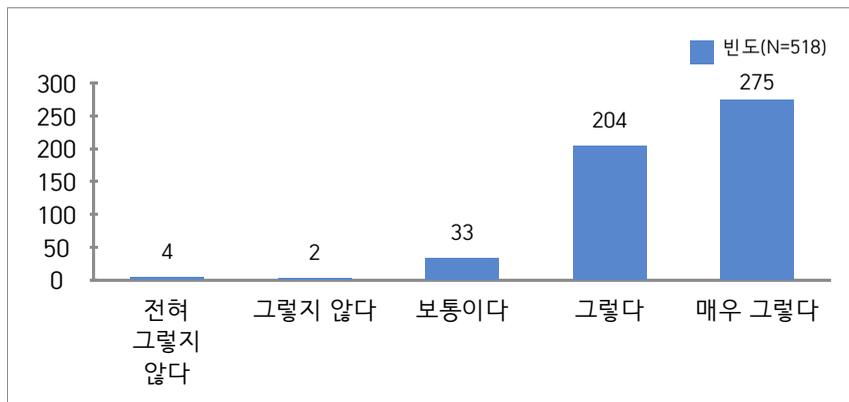
〈그림 36〉 지도자로서의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할 스포츠 인권

- 지도자로서 선수에게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할 스포츠 인권에 대해 폭력 및 성폭력 근절이라 응답한 지도자가 446명(86.1%), 학습권 보장이라 응답한 지도자가 335명(64.7%), 휴식시간 보장이라 응답한 지도자가 286명(55.2%), 단체 기합 근절이라 응답한 지도자가 214명(41.3%) 순으로 나타났다.

Q27. 평소 선수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표 38〉 선수 인권의 가치 수호에 대한 노력

인권 가치 수호 노력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	0.8
그렇지 않다	2	0.4
보통이다	33	6.4
그렇다	204	39.4
매우 그렇다	275	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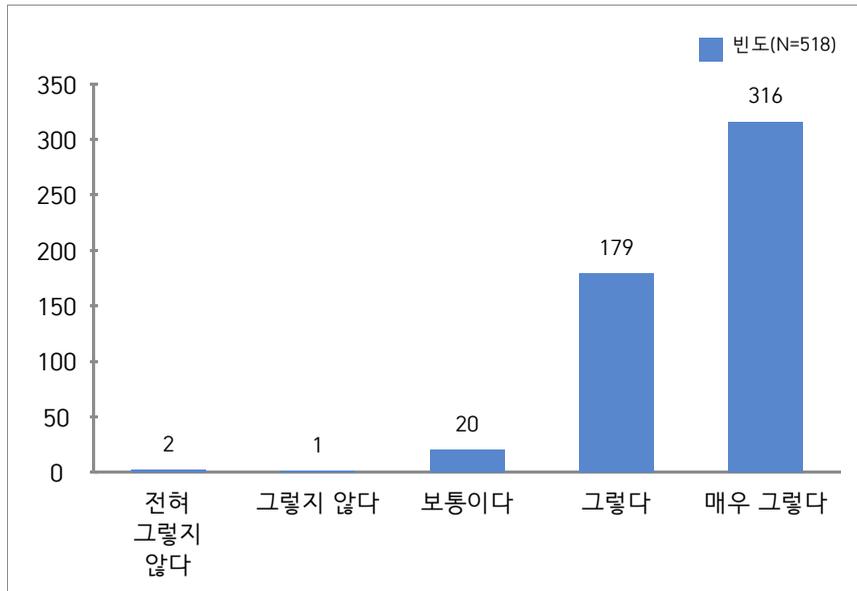
〈그림 37〉 선수 인권의 가치 수호에 대한 노력

- 평소 선수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275명(53.1%), 그렇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204명(39.4%), 보통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33명(6.4%)으로 나타났다.

Q28. 선수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인권 친화적 운동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표 39〉 선수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근절 노력

폭력 및 성폭력 근절 노력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0.4
그렇지 않다	1	0.2
보통이다	20	3.9
그렇다	179	34.6
매우 그렇다	316	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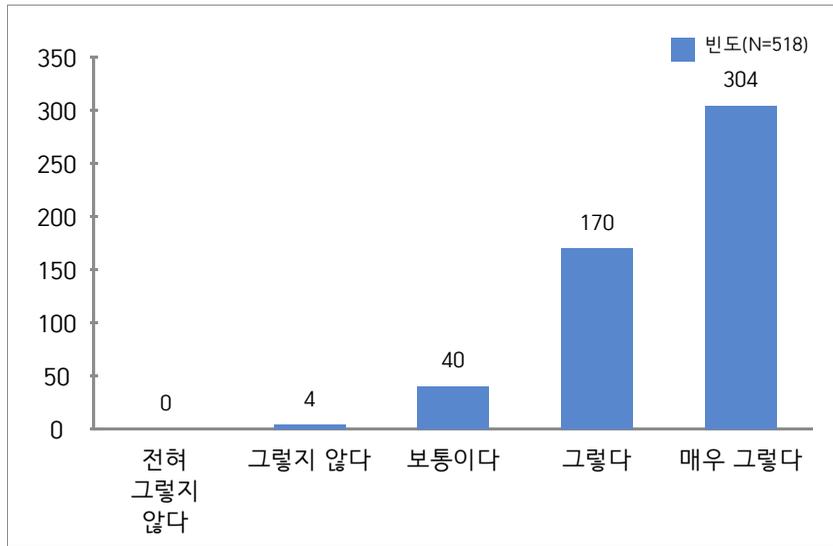
〈그림 38〉 선수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근절 노력

- 선수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인권 친화적 운동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316명(61%),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79명(34.6%),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0명(3.9%)으로 나타났다.

Q29. 선수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할 경우 미리 동의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표 40〉 불필요한 신체접촉 방지 노력

불필요한 신체접촉 방지 노력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그렇지 않다	4	0.8
보통이다	40	7.7
그렇다	170	32.8
매우 그렇다	304	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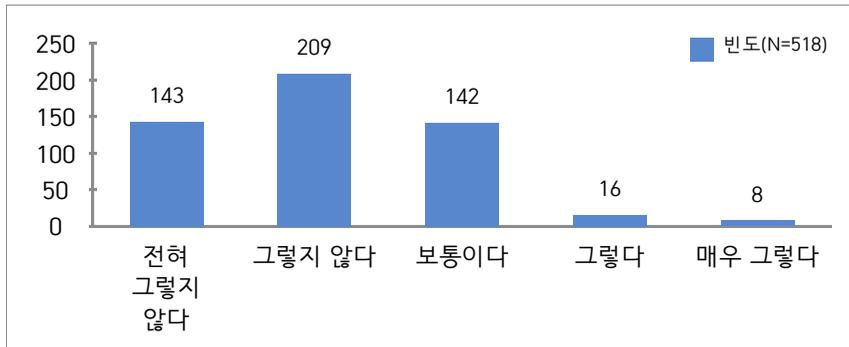
〈그림 39〉 불필요한 신체접촉 방지 노력

- 평소 선수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접촉이 필요할 경우 미리 동의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304명(58.7%),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70명(32.8%),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40명(7.7%)으로 나타났다.

### Q30. 선수들에게 언어적 폭력 등을 자주 합니까?

〈표 41〉 언어적 폭력의 빈도

언어적 폭력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43	27.6
그렇지 않다	209	40.3
보통이다	142	27.4
그렇다	16	3.1
매우 그렇다	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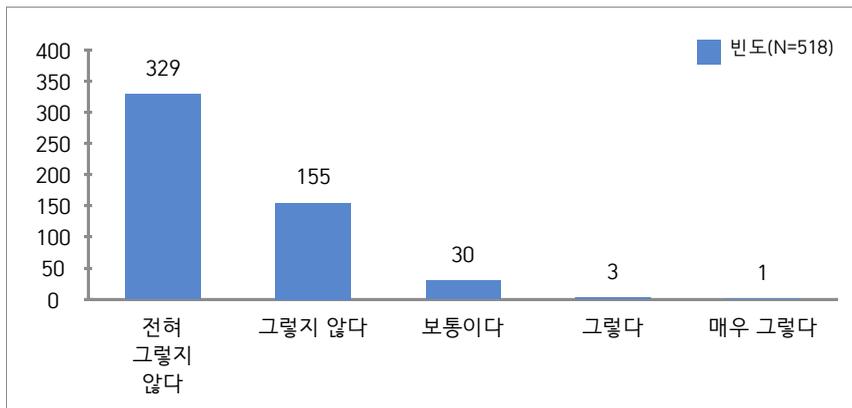
〈그림 40〉 언어적 폭력의 빈도

□ 평소 선수들에게 언어적 폭력을 자주 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43명(27.6%),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09명(40.3%),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42명(27.4%)으로 나타났다.

### Q31. 선수들 앞에서 음주 혹은 흡연 등을 자주 합니까?

〈표 42〉 선수들 앞에서의 음주/흡연 여부

음주 혹은 흡연 여부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29	63.5
그렇지 않다	155	29.9
보통이다	30	5.8
그렇다	3	0.6
매우 그렇다	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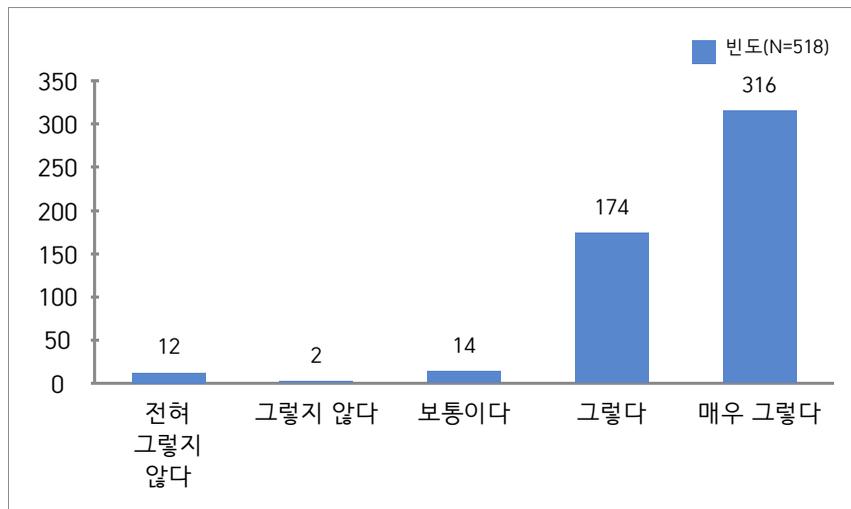
〈그림 41〉 선수들 앞에서의 음주/흡연 여부

- 평소 선수들 앞에서 음주 혹은 흡연 등을 자주 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329명(63.5%),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55명(29.9%),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30명(5.8%)으로 나타났다.

Q32. 저학년이 고학년 선수에게 폭력이나 괴롭힘(심부름, 빨래 등을 포함)을 당하고 있는지 평소에 주의하여 관찰하고 있습니까?

〈표 43〉 운동부 지도자의 학생 주의 및 관찰 여부

학생 관찰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2	2.3
그렇지 않다	2	0.4
보통이다	14	2.7
그렇다	174	33.6
매우 그렇다	316	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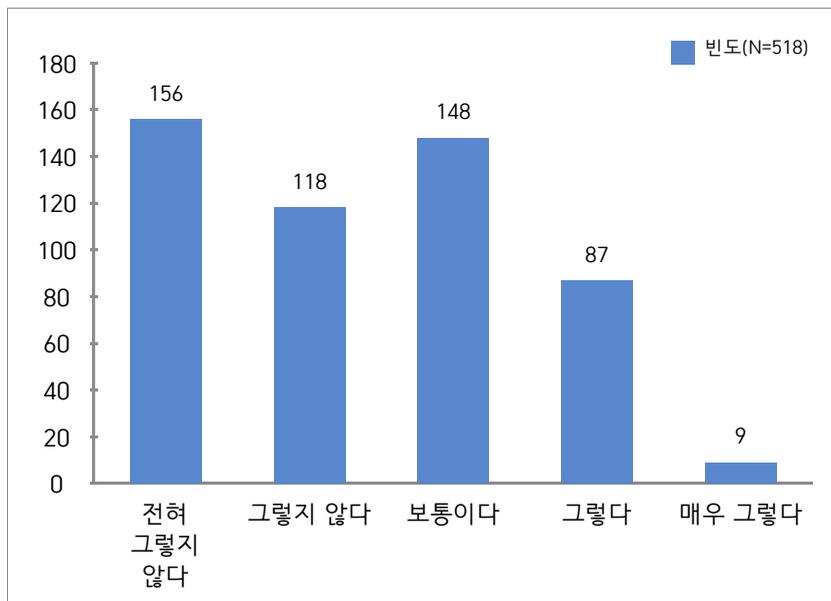
〈그림 42〉 운동부 지도자의 학생 주의 및 관찰 여부

- 저학년이 고학년 선수에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평소에 주의하여 관찰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316명(61%),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74명(33.6%),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4명(2.7%)으로 나타났다.

Q33. 선수들에게 운동 외적(복장, 두발, 핸드폰 사용 등)행동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표 44〉 선수들의 운동 외적 행동 제한 여부

운동 외적 행동 제한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56	30.1
그렇지 않다	118	22.8
보통이다	148	28.6
그렇다	87	16.8
매우 그렇다	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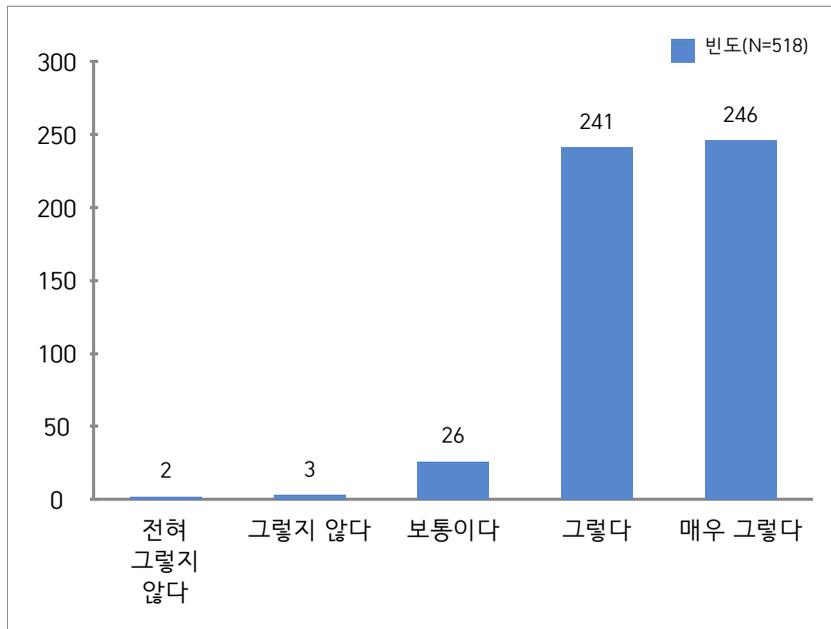
〈그림 43〉 선수들의 운동 외적 행동 제한 여부

- 평소 선수들에게 운동 외적 행동을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56명(30.1%),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18명(22.8%),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48명(28.6%)으로 나타났다.

Q34. 선수 개개인의 운동과 관련된 고충 및 지도상담(운동 목표, 훈련, 경기력, 선수(성)폭력, 학습권, 부상 예방 및 안전관리, 일상생활 전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표 45〉 선수 고충 및 지도 상담을 위한 노력

선수 고충 및 지도상담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4
그렇지 않다	3	.6
보통이다	26	5.0
그렇다	241	46.5
매우 그렇다	246	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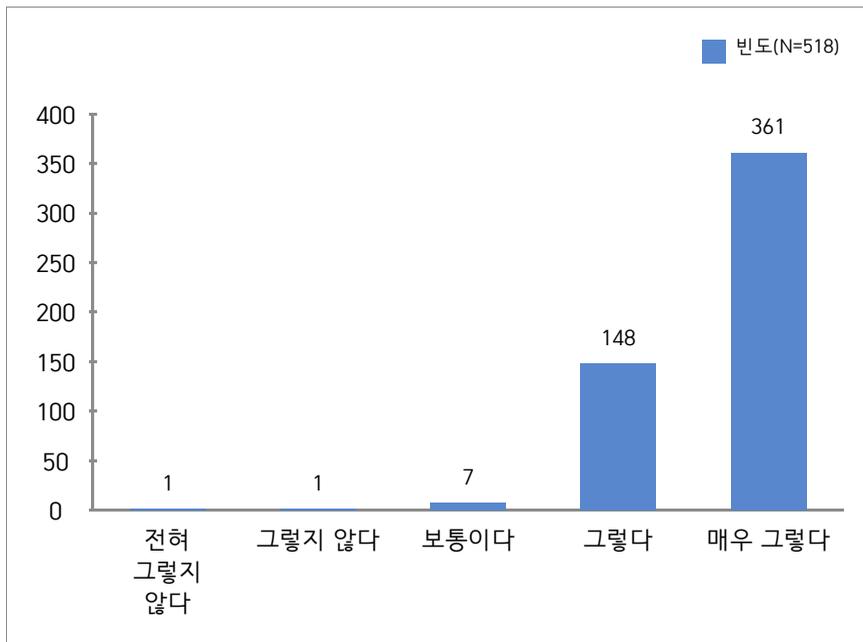
〈그림 44〉 선수 고충 및 지도 상담을 위한 노력

- 선수 개개인의 운동과 관련된 고충 및 지도 상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46명(47.5%),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41명(46.5%),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6명(5.0%)으로 나타났다.

Q35. 선수에게 공정한 출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표 46〉 공정한 출전기회 제공에 대한 노력

공정한 출전기회 제공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2
그렇지 않다	1	.2
보통이다	7	1.4
그렇다	148	28.6
매우 그렇다	361	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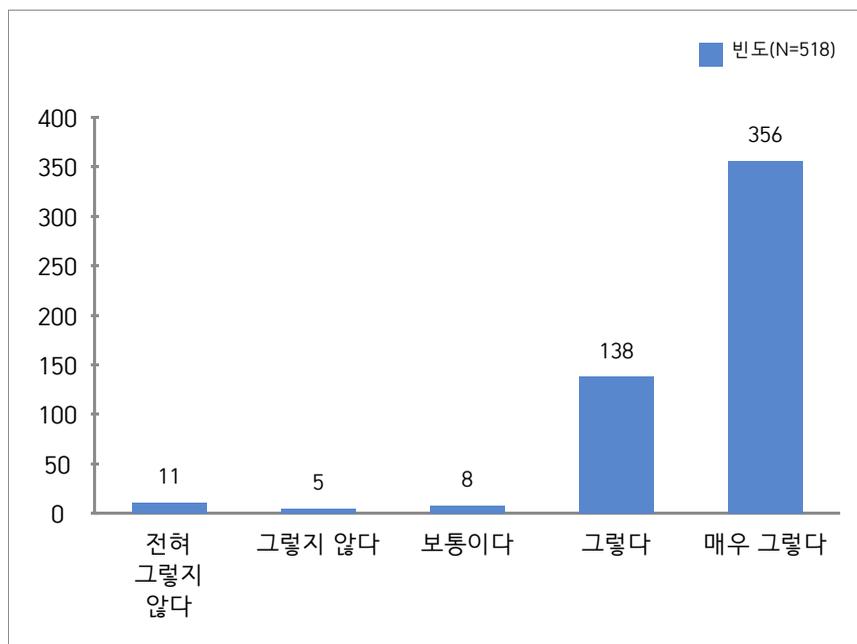
〈그림 45〉 공정한 출전기회 제공에 대한 노력

- 선수에게 공정한 출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361명(69.7%),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48명(28.6%),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7명(1.4%)으로 나타났다.

Q36. 선수들의 개인적 특성(외모, 성격, 기량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표 47〉 선수들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노력

차별하지 않으려는 노력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1	2.1
그렇지 않다	5	1.0
보통이다	8	1.5
그렇다	138	26.6
매우 그렇다	356	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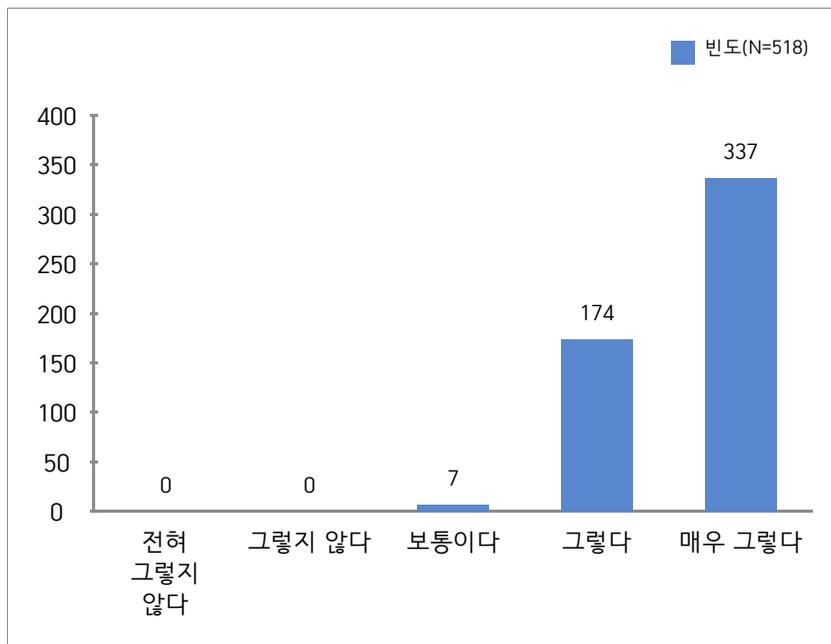
〈그림 46〉 선수들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노력

- 선수들의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356명(68.7%),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38명(26.6%),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8명(1.5%)으로 나타났다.

Q37. 선수를 지도할 때 선수의 인성과 관련하여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표 48〉 지도 시 선수의 인성에 대한 관심 여부

인성에 대한 관심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그렇지 않다	0	0
보통이다	7	1.4
그렇다	174	33.6
매우 그렇다	337	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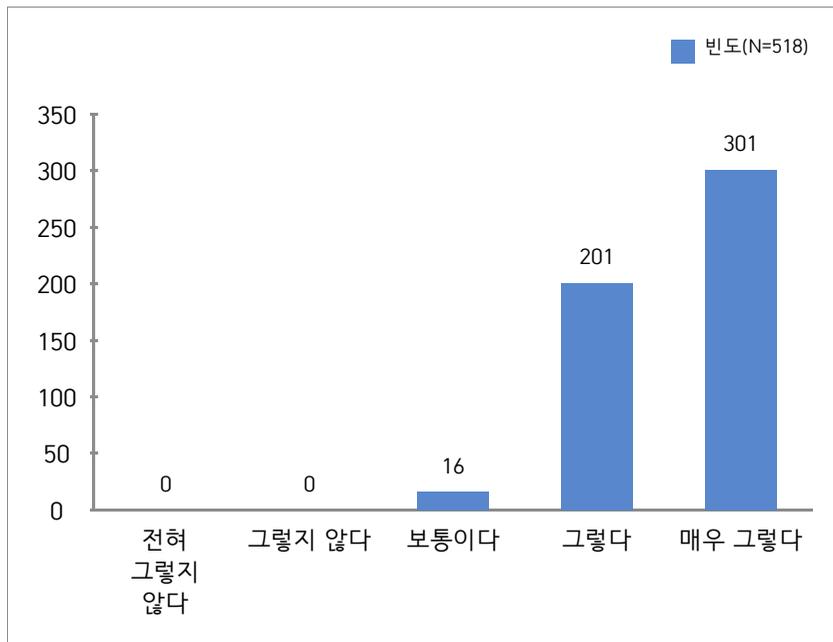
〈그림 47〉 지도 시 선수의 인성에 대한 관심 여부

- 선수를 지도할 때 선수의 인성과 관련하여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337명(65.1%),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74명(33.6%),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7명(1.4%)으로 나타났다.

Q38. 선수의 자율적인 운동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표 49〉 선수 동기부여를 위한 노력

동기부여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그렇지 않다	0	0
보통이다	16	3.1
그렇다	201	38.8
매우 그렇다	301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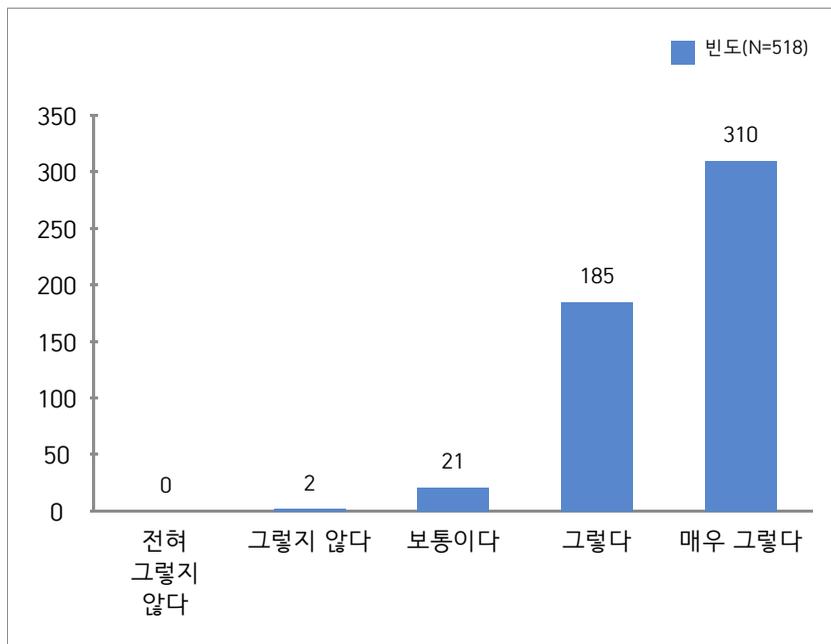
〈그림 48〉 선수 동기부여를 위한 노력

- 선수의 자율적인 운동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노력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301명(58.1%),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01명(38.8%),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6명(3.1%)으로 나타났다.

Q39. 선수들이 운동에 흥미를 가지고 지속할 수 있도록 평소에 다양한 지도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표 50〉 다양한 지도방법 도입에 대한 노력

다양한 지도방법 도입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그렇지 않다	2	0.4
보통이다	21	4.1
그렇다	185	35.7
매우 그렇다	310	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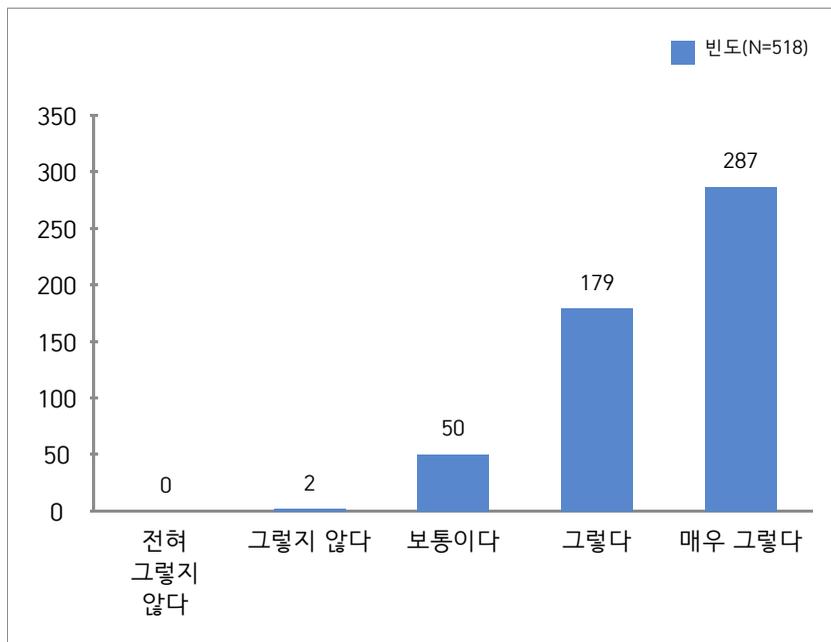
〈그림 49〉 다양한 지도방법 도입에 대한 노력

- 선수들이 운동에 흥미를 가지고 지속할 수 있도록 평소에 다양한 지도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310명(59.8%),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85명(35.7%),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1명(4.1%)으로 나타났다.

Q40. 선수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표 51〉 학습권 보장에 대한 노력

학습권 보장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그렇지 않다	2	0.4
보통이다	50	9.7
그렇다	179	34.6
매우 그렇다	287	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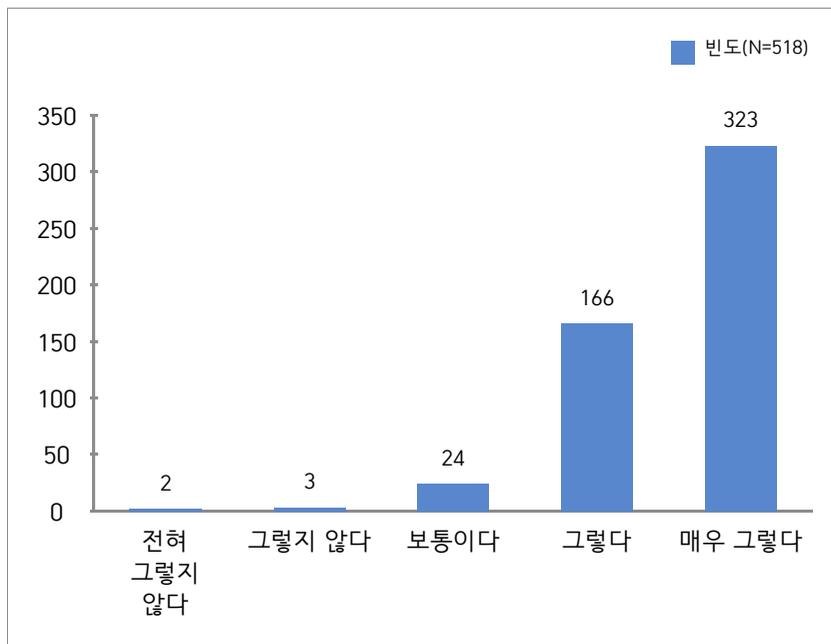
〈그림 50〉 학습권 보장에 대한 노력

- 선수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87명(55.4%),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79명(34.6%),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50명(9.7%)으로 나타났다.

Q41. 선수들이 학생 생활 전반(수업,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에 빠지지 않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표 52〉 학생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

학생활동 참여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0.4
그렇지 않다	3	0.6
보통이다	24	4.6
그렇다	166	32.0
매우 그렇다	323	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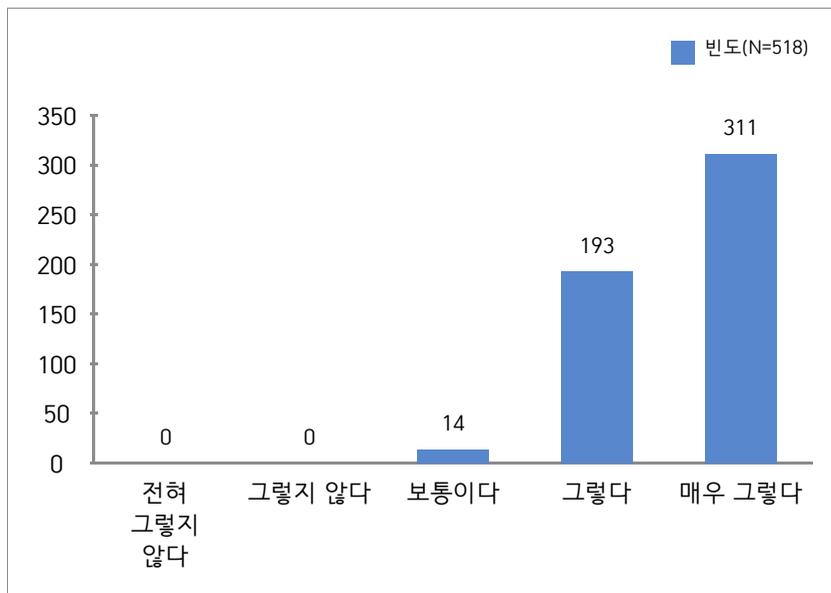
〈그림 51〉 학생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

- 선수들이 학생 생활 전반에 빠지지 않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323명(62.4%),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66명(32.0%),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4명(4.6%)으로 나타났다.

Q42. 선수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도자와 선수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대처(훈련방식, 경기출전 등)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표 53〉 선수와의 갈등 대처를 위한 노력

갈등대처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그렇지 않다	0	0
보통이다	14	2.7
그렇다	193	37.3
매우 그렇다	311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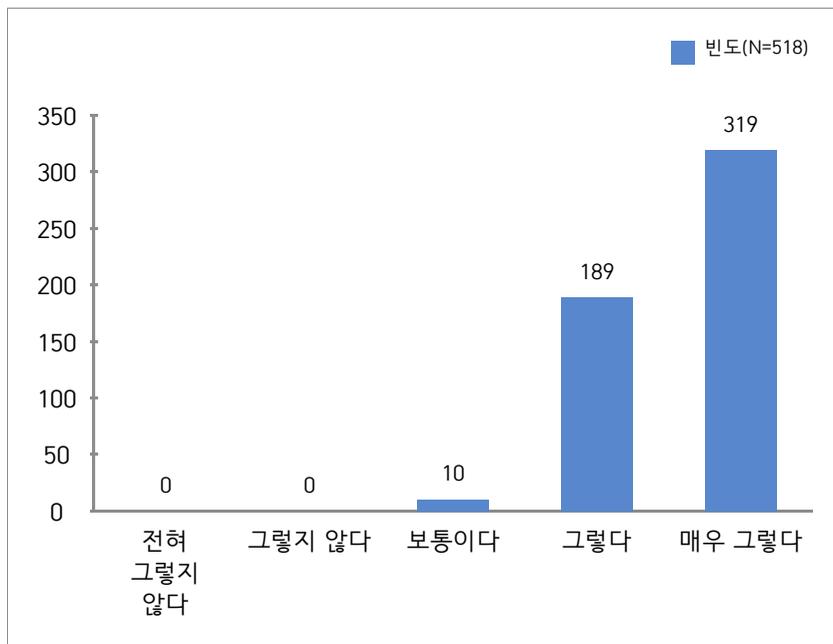
〈그림 52〉 선수와의 갈등 대처를 위한 노력

- 선수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대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311명(60.0%),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93명(37.3%),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4명(2.7%)으로 나타났다.

Q43. 선수와 소통 및 선수관리(운동부 분위기, 성원 간 관계, 갈등 상황 등)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표 54〉 선수와의 소통 및 선수관리에 대한 노력

소통 및 선수관리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그렇지 않다	0	0
보통이다	10	1.9
그렇다	189	36.5
매우 그렇다	319	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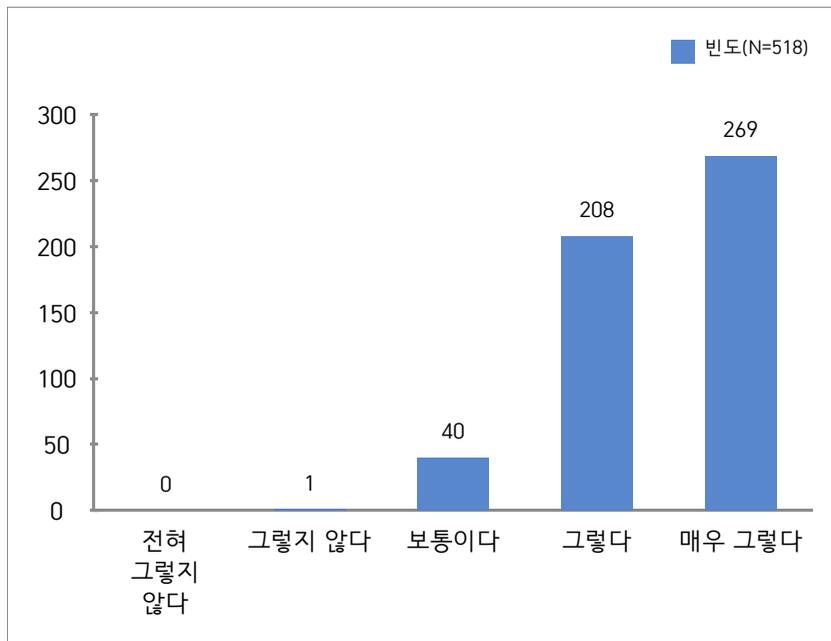
〈그림 53〉 선수와의 소통 및 선수관리에 대한 노력

- 선수와 소통 및 선수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319명(61.6%),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89명(36.5%),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0명(1.9%)으로 나타났다.

Q44. 주간, 월간,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표 55〉 체계적 훈련을 위한 노력

체계적 훈련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그렇지 않다	1	0.2
보통이다	40	7.7
그렇다	208	40.2
매우 그렇다	269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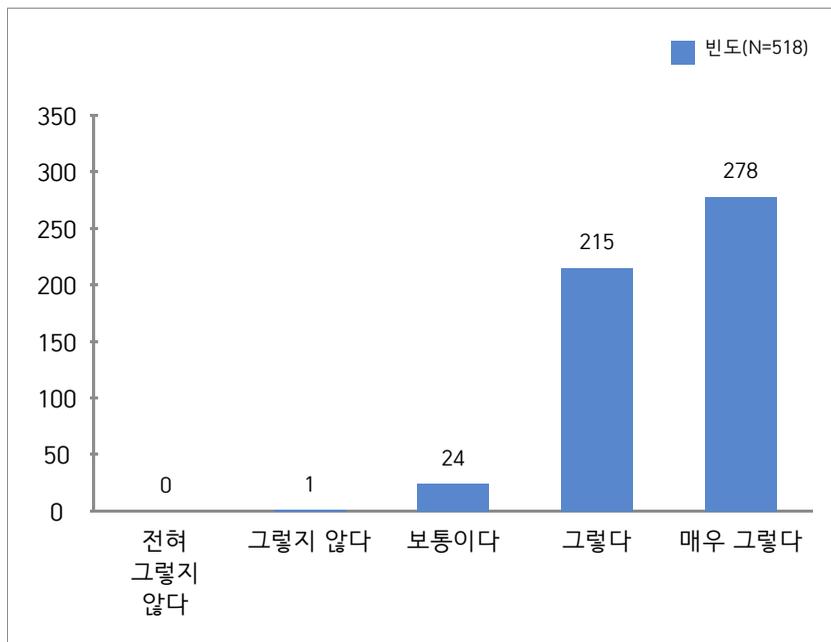
〈그림 54〉 체계적 훈련을 위한 노력

- 주간, 월간,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69명(51.9%),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08명(40.2%),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40명(7.7%)으로 나타났다.

Q45. 선수에게 비전 및 방향 제시와 신뢰감 증대를 위한 리더십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표 56〉 선수의 리더십 증진을 위한 노력

리더십 증진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그렇지 않다	1	.2
보통이다	24	4.6
그렇다	215	41.5
매우 그렇다	278	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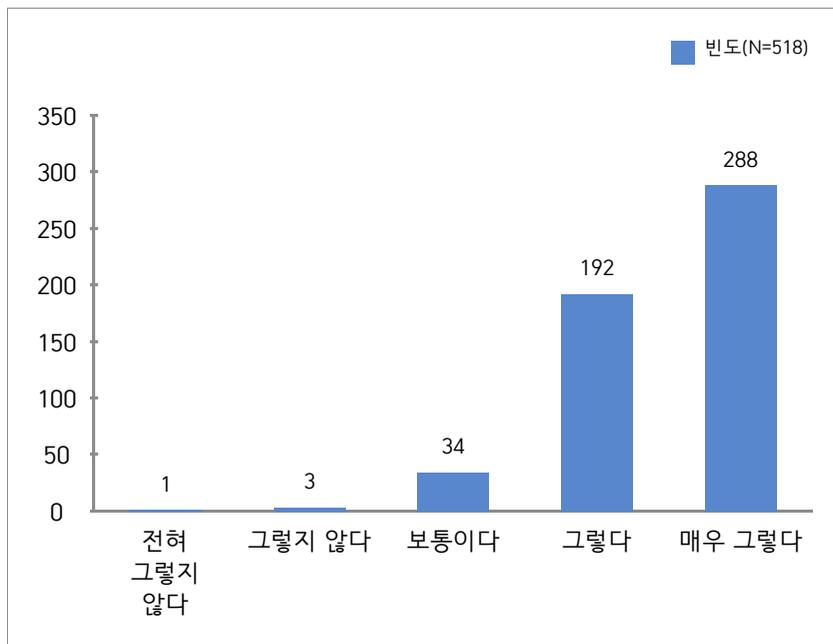
〈그림 55〉 선수의 리더십 증진을 위한 노력

- 선수에게 비전 및 방향 제시와 신뢰감 증대를 위한 리더십 증진에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78명(53.7%),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15명(41.5%),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4명(4.6%)으로 나타났다.

Q46. 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재교육(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까?

〈표 57〉 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재교육 참석

재교육 참석	빈도(N=518)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0.2
그렇지 않다	3	0.6
보통이다	34	6.6
그렇다	192	37.1
매우 그렇다	288	55.6



〈그림 56〉 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재교육 참석

- 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288명(55.6%), ‘그렇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92명(37.1%),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34명(6.6%)으로 나타났다.

## 6. 성별/소속/임금수준(연봉)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 가. 성별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차이

〈표 58〉 성별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독립표본 t검증 결과

평가항목	성별	N	M	SD	t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노력	I 남	422	4.578	.622	1.717
	II 여	96	4.458	.596	
언어폭력 여부	I 남	422	2.111	.934	.329
	II 여	96	2.083	.705	
선수 앞 음주 및 흡연	I 남	422	1.500	.681	6.291*
	II 여	96	1.177	.383	
운동외적 행동 제한	I 남	422	2.376	1.121	.177
	II 여	96	2.354	1.178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려 노력	I 남	422	4.568	.800	-1.512
	II 여	96	4.677	.589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 보장	I 남	422	4.447	.682	-.136
	II 여	96	4.458	.679	
학생생활 전반에 참여 독려	I 남	422	4.547	.658	-.489
	II 여	96	4.583	.609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재교육 참석 노력	I 남	422	4.469	.670	-.272
	II 여	96	4.489	.632	

\* $p < .05$

지도자 성별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인권옹호자의 역할 문항 중 주요 문항을 설정하고, 독립표본 t-검정을 한 결과는 〈표 58〉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문항 중 선수 앞 음주 및 흡연 문항에서 남성지도자(M=1.500)가 여성지도자(M=1.17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때 t값이 6.291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p < .001$ ). 따라서 남성지도자가 여성지도자보다 선수 앞 음주 및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인 평균을 고려했을 때 대체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성별에 따른 인권옹호자 역할 문항 중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노력, 언어폭력 여부, 운동외적 행동 제한,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려 노력,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 보장, 학생생활 전반에 참여 독려,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재교육 참석 노력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나. 소속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차이

〈표 59〉 소속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일원분산분석 결과

평가항목	소속	N	M	SD	F	Scheffe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노력	I.초등학교	158	4.481	.665	1.505	
	II.중학교	173	4.624	.509		
	III.고등학교	142	4.549	.669		
	IV.대학교	45	4.577	.656		
언어폭력 여부	I.초등학교	158	2.082	.895	.722	
	II.중학교	173	2.185	.800		
	III.고등학교	142	2.063	.924		
	IV.대학교	45	2.022	1.137		
선수 앞 음주 및 흡연	I.초등학교	158	1.196	.443	15.191***	II III IV) I, IV) I II
	II.중학교	173	1.462	.575		
	III.고등학교	142	1.570	.728		
	IV.대학교	45	1.800	.919		
운동외적 행동 제한	I.초등학교	158	2.120	1.141	6.322***	II III) I
	II.중학교	173	2.560	1.036		
	III.고등학교	142	2.521	1.177		
	IV.대학교	45	2.066	1.095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려 노력	I.초등학교	158	4.696	.645	2.375	
	II.중학교	173	4.474	.912		
	III.고등학교	142	4.605	.629		
	IV.대학교	45	4.600	.889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 보장	I.초등학교	158	4.594	.575	5.059**	I) II
	II.중학교	173	4.335	.725		
	III.고등학교	142	4.387	.732		
	IV.대학교	45	4.577	.583		

평가항목	소속	N	M	SD	F	Scheffe
학생생활 전반에 참여 독려	I.초등학교	158	4.753	.461	8.334***	I > II III
	II.중학교	173	4.485	.652		
	III.고등학교	142	4.408	.782		
	IV.대학교	45	4.577	.583		
인권익 함양을 위해 재교육 참석 노력	I.초등학교	158	4.607	.562	3.299*	I > III
	II.중학교	173	4.433	.640		
	III.고등학교	142	4.387	.761		
	IV.대학교	45	4.422	.690		

\*p<.05, \*\*p<.01, \*\*\*p<.001

지도자 소속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문항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일원 분산분석 결과는 <표 59>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소속에 따른 선수 앞 음주 및 흡연 문항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지도 집단(M=1.196), 중학교 지도 집단(M=1.462), 고등학교 지도 집단(M=1.570), 대학교 지도 집단(M=1.800)간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15.191, p<.001). 집단별 차이 소재를 알아보기 위한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중학교 지도, 고등학교 지도, 대학교 지도 집단이 초등학교 지도 집단보다 선수 앞 음주 및 흡연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 지도 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지도 집단보다 선수 앞 음주 및 흡연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에 따른 운동외적 행동 제한 문항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지도 집단(M=2.120), 중학교 지도 집단(M=2.560), 고등학교 지도 집단(M=2.521), 대학교 지도 집단(M=2.066)간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6.322, p<.001). 집단별 차이 소재를 알아보기 위한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중학교 지도, 고등학교 지도 집단이 초등학교 지도 집단보다 운동외적 행동 제한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에 따른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 보장 문항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지도 집단(M=4.594), 중학교 지도 집단(M=4.335), 고등학교 지도 집단(M=4.387), 대학교 지도 집단(M=4.577)간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5.059, p<.01). 집단별 차이 소재를 알아보기 위한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교 지도 집단이 중학교 지도 집단보다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에 따른 학생생활 전반에 참여 독려 문항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지도 집단(M=4.753), 중학교 지도 집단(M=4.485), 고등학교 지도 집단(M=4.408), 대학교 지도 집단(M=4.577)간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8.334,  $p < .001$ ). 집단별 차이 소재를 알아보기 위한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교 지도 집단이 중학교, 고등학교 지도 집단보다 학생생활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에 따른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재교육 참석 노력 문항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지도 집단(M=4.607), 중학교 지도 집단(M=4.433), 고등학교 지도 집단(M=4.387), 대학교 지도 집단(M=4.422)간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3.299,  $p < .05$ ). 집단별 차이 소재를 알아보기 위한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교 지도 집단이 고등학교 지도 집단보다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재교육 참석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속에 따른 인권옹호자 역할 문항 중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노력, 언어폭력 여부,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려는 노력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 다. 임금수준(연봉)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차이

〈표 60〉 임금수준(연봉)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독립표본 t검증 결과

평가항목	임금수준(연봉)	N	M	SD	t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노력	I 3,000만원 미만	341	4.551	.633	-.238
	II 3,000만원 이상	177	4.565	.591	
언어폭력 여부	I 3,000만원 미만	341	2.079	.899	-.952
	II 3,000만원 이상	177	2.158	.890	
선수 앞 음주 및 흡연	I 3,000만원 미만	341	1.381	.600	-2.726**
	II 3,000만원 이상	177	1.553	.721	
운동외적 행동 제한	I 3,000만원 미만	341	2.258	1.154	-3.228***
	II 3,000만원 이상	177	2.593	1.051	

평가항목	임금수준(연봉)	N	M	SD	t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려 노력	I 3,000만원 미만	341	4.598	.763	.389
	II 3,000만원 이상	177	4.570	.773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 보장	I 3,000만원 미만	341	4.475	.666	1.171
	II 3,000만원 이상	177	4.401	.709	
학생생활 전반에 참여 독려	I 3,000만원 미만	341	4.592	.599	1.756
	II 3,000만원 이상	177	4.480	.731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재교육 참석 노력	I 3,000만원 미만	341	4.486	.644	.659
	II 3,000만원 이상	177	4.446	.697	

\*\*p<.01, \*\*\*p<.001

지도자 임금수준(연봉)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문항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표 60>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지도자 임금수준(연봉)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문항 중 선수 앞 음주 및 흡연 문항에서 3,000만원 이상 받는 지도자(M=1.553)가 3,000만원 미만 받는 지도자(M=1.38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때 t값이 -2.726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1). 따라서 임금수준(연봉)이 높은 지도자 일수록 선수 앞 음주 및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인 평균을 고려했을 때 대체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지도자 임금수준(연봉)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문항 중 운동외적 행동 제한 문항에서 3,000만원 이상 받는 지도자(M=2.593)가 3,000만원 미만 받는 지도자(M=2.25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때 t값이 -3.228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01). 따라서 임금수준(연봉)이 높은 지도자 일수록 운동외적 행동에 대한 제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수준(연봉)에 따른 인권옹호자 역할 문항 중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 언어폭력 여부,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려 노력,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 보장, 학생생활 전반에 참여 독려,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재교육 참석 노력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 IV

---

학교운동부 인권 친화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



## 1.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다양한 문제 인식에 있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문제로 생활고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학생선수를 지도하는데 많은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고, 다른 직업과 병행하거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지도자들도 다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강신욱, 2007; 김동현, 윤양진, 2011; 류태호, 2004).

김동규, 구강본(2009) 역시 한국스포츠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도자 문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학교 스포츠에서 경기성적이 지도자의 계약, 연봉, 승진 등과 연계되어 있음은 학생들을 볼모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지도자들의 신분안정과 처우 개선이 뒷받침될 때 지도자에 대한 책임, 즉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 그리고 윤리문제 등을 물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도 위의 주장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자의 70.7%가 기간제 계약직이라 응답하였고, 계약 기간이 1년이라 응답한 조사대상자 역시 73.4%였다. 임금 총액은 3,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65.9%였고, 임금 수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이 82.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지도자는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면 더욱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언급하였다.

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중시하다 보니 훈련 일정을 맞추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오전에 수업 있는 학생들은 오후에 훈련하고, 오후에 수업 있는 학생들은 오전에 훈련해야 해서 전체훈련은 야간이나 새벽에 해야 해요. 그래서 지도자는 과거보다 지도업무가 훨씬 증가한 셈인데 임금은 별반 차이가 없으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D, 육상지도자).

최근에 발표된 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안에도 지도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선수들의 훈련지도와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업무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운동부 지도자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활동에 임하며 학교 공동체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생선수의 운동기능

향상을 넘어 선수의 전인적 인성의 발달을 돕는 교육자이자 스포츠문화의 전수자로 지도자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교육청과 시도체육회에 소속되어 전임코치, 순회코치 등으로 불리며, 계약 기간은 대부분 1년이다. 학교 관리자와의 관계와 담당 운동부의 경기실적이 재계약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기실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도자 인건비는 일부 교육청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학부모가 제공하고 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여 수준의 현실화와 실질적 고용안정 보장이 필요하며, 정부가 이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스포츠혁신위원회, 2019). 따라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지도자 급여에서 학부모의 지원 비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자들이 정규직 혹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고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결과 학교운동부 지도자 주요 고충(Q23, Q24)이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임금으로 나타났고, 이는 과열된 경쟁체계의 요인(Q21)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부모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경우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학부모 지원 비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협회 등의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 3항 7호’의 개정 등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

둘째, 학교운동부 지도자 평가방법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즉 경기실적 위주의 평가방식을 탈피하고 재임용 기준에 인권 친화적 활동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성적과 신분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지도자들을 보호해줄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격 기준 등)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각호는 아래와 같다.

1. 제 3항 각호(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 훈련장의 안전관리)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기실적에 따라 재임용의 여부가 결정되는 곳이 많으며, 학교와 학부모 역시 경기실적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초등, 중등학교의 경우 성적보다는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장에 성적을 내지 못하면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재계약을 빌미로 심한 압박을 받다 보니 성적을 우선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성적으로 심한 압박을 주던 교장 선생님이 우승 한 번 하고 나니 재계약은 물론 대우가 달라졌어요(B, 축구지도자).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경기실적뿐만 아니라 인권 친화적 운동부 운영의 여부, 지도자 재교육 이수 등을 다각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 감수성 제고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2019년 11월 7일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스포츠 (성)폭력 판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5,274개교 초·중·고 선수 6만 3,2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5만7,557명이 응답했다. 조사결과 응답한 5만7,557명의 초·중·고 학생선수 중 9,035명이 언어폭력을, 8,440명이 신체폭력을 경험했으며, 2,212명이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응답자 수와 비교할 때 약 34.5%로 3명 중 1명이 넘는다. 그리고 주요 가해자로는 지도자(75.5%), 선배선수(15.5%) 등이었다(박민기, 2019. 11. 07).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86.1%가 선수에게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할 스포츠 인권으로 폭력 및 성폭력 근절이라 응답하였다. 또한,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선수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약 92.5%), 선수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인권 친화적 운동부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95.6%) 등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학생선수들의 응답 결과와 지도자들의 응답이 매우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부 지도자들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 지도자의 경

우 지도자의 인권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본인도 현장에서 인권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는데, 지도과정에서 간혹 현재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선수가 일탈적 행동을 했을 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학생선수가 흡연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학부모조차 강압적인 방법을 취하더라도 학생선수 행동이 교정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매일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 전화기의 문자 메시지로 일과를 확인받는 조치를 했는데, 학생은 이것도 지나친 간섭과 자유의 억압, 즉 인권침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학생선수 본인은 늘 보호받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일반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과 같은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C, 씨름지도자).

또 다른 지도자의 경우 현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교육으로는 인권침해의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이 때문에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인식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여러 번 인권교육을 받았지만, 솔직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없었어요.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인권교육은 학생들에게는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지도자들에게는 신고당하지 않는 방법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폭력, 성폭력 외에 어떠한 행위가 인권침해가 되는지 사례별로 교육을 해주면 현장에서 인권침해와 학생들과 지도자의 인식 차이가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A, 야구지도자).

따라서 이와 같은 양적·질적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방식의 변화이다. 현재 사실상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도자 인권교육은 대규모의 강의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교육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현장의 지도자들은 인권교육을 민방위 훈련에 비유하기도 한다.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를 위해 소규모 교육 형태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강의형태를 탈피하여 토론이나 참여식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내용의 변화이다.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인권교육이 현장에서 폭력, 성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학습권 보장 등 스포츠 인권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이창훈 외, 2018).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전달 차원을 넘어선 지도

자의 인권 감수성 제고와 인권옹호자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 내용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지도자의 대처방식에 대한 케이스별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 3. 학교운동부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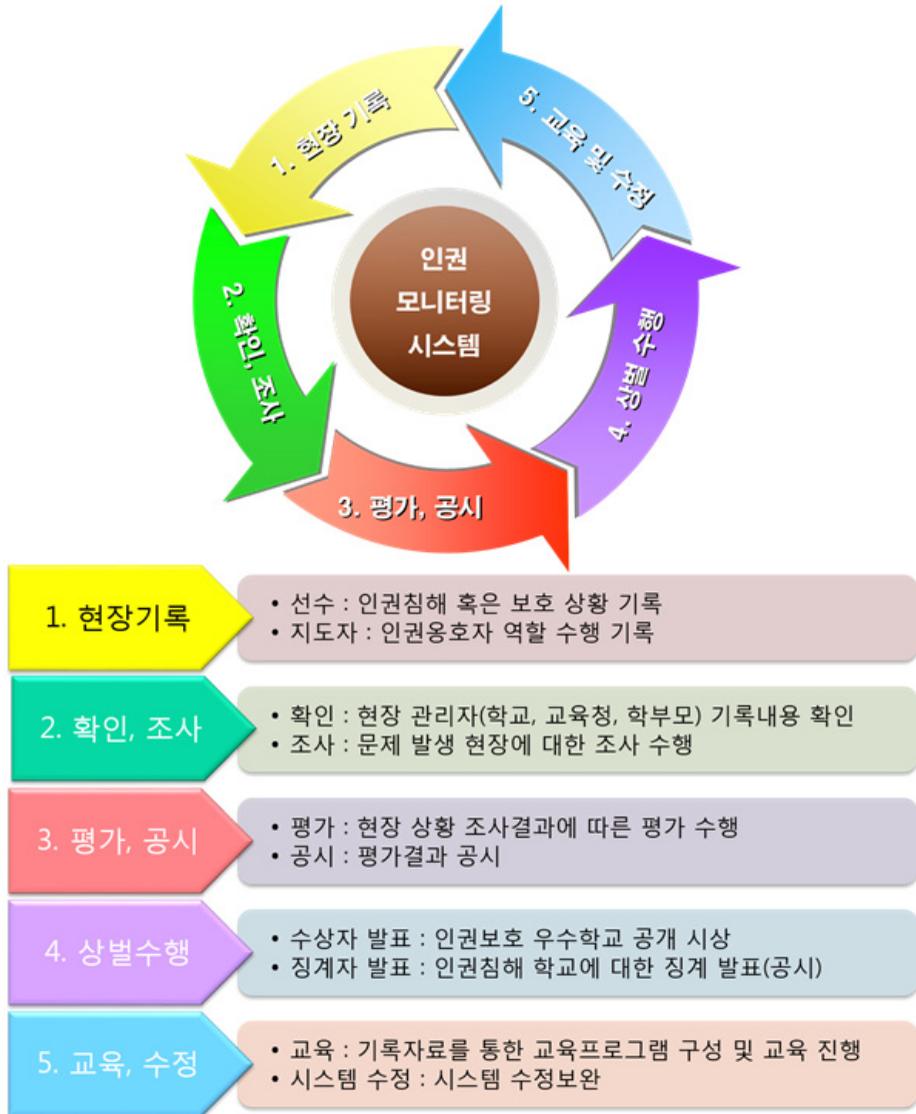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와 지도자 인권 보호 및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운동부를 구성하는 구성원(학생선수, 지도자, 학교, 학부모 등)과 관리, 감독 주체 단체(교육청, 해당 종목 협회 등) 상호 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동부 인권 보호를 위한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의 강화이다. 현장의 안전성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과 함께 훈련환경의 공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학생선수는 현재 훈련, 시합, 생활환경의 인권실태를 즉시 기록, 보고하고 지도자는 훈련지도 방법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을 즉시 기록, 보고함으로써 학생운동부 인권실태를 다각적으로 기록,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와 학교, 교육청 등은 이 실태 현황을 상시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장의 공개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학교운동부 인권 보호 노력의 지속성 확보 및 강화이다. 학생선수 인권의 보호를 위한 노력은 당연히 지속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생선수는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도자는 인권 친화적인 지도와 학생선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고, 이를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은 학생선수가 인지하고 있는 인권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도자의 인권 친화적 활동에 대한 효과와 학생선수의 인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학생선수와 지도자에게 본인이 속한 운동부 현장의 인권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인권 보호 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학교운동부 현장의 인권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동기부여 기능 강화이다. 현장의 인권 친화적 환경의 조성, 관리,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수적

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인권실태 평가와 이를 통한 상벌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장 실태의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며, 현장 구성원들이 현장의 인권 현황을 상기하고, 개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상벌제도 구축의 기본 토대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그림 57〉 학교운동부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도식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한 최적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적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인권 현황에 대한 현황분석과 모니터링 문항, 조사방법, 조사결과 평가방안, 상벌 규정 등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성별, 소속, 임금수준(연봉) 등에 따라 인권옹호자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속에 따라서는 비교적 다양한 문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선행연구 작업이 완료된 후 이 내용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절차를 통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절차 1. 선행 연구사업 수행

- 현황, 문제점, 조사 문항 개발, 평가방안 및 상벌 규정 개발 등

절차 2. 관련 규정 제정 및 관리 협조체계 구축

- 인권 친화적 환경조성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반 규정 제정
- 학교, 교육청, 해당 종목 단체 등의 협조체계 구축(관리, 감독, 상벌 등)

절차 3.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유기적 운영

-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홍보, 관리계획 수립
-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기능 확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운영계획 수립

다음으로 시스템 참여자의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선수와 지도자가 현장의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시스템 기록 참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익명성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의성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 현황 기록, 조사, 평가, 교육, 개선이 가능한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운동부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장에서 학생선수가 판단하는 인권 상황, 지도자가 행하는 인권적 지도 활동에 대한 기록기능, 학교운동부 운영 구성원인 학교와 관리단체인 교육청과 종목 협회의 현황 조사 기능, 현장 상황에 적

합한 교육 내용 파악의 기능,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요인 분석의 기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은 향후 학교운동부 인권 현황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지속적인 기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

V

---

요약 및 결론

---



## 1. 요약

### ○ 연구의 배경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엘리트 스포츠 현장에서 학생지도뿐만 아니라 진학 및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엘리트 스포츠 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인권 친화적 운동부 문화를 선도할 인권옹호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스포츠 현장에서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학교운동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불평등한 관계, 즉 구조적인 문제를 지목한다면, 지도자 역시 불평등한 위치에서 겪고 있는 고충은 없는지, 그것이 인권옹호자의 역할에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삶과 그에 대한 고충, 인권옹호자의 역할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교운동부의 인권 친화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제와 관련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기술적 자료(descriptive data)의 체계적 분석과정인 문헌연구를 이용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의 협조를 받아 확보된 초, 중, 고, 대학교 지도자의 명단 중 오류 및 중복된 전화번호를 제외한 유효한 휴대폰 번호 17,165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무작위 추출법(random sampling)을 통해 2차례에 걸쳐 6,000명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는 전문기관(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조사된 518개의 데이터가 모두 분석에 활용되었다. 심층 면담은 설문지 내용 구성을 위한 1차 면담과 주요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면담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 ○ 연구결과

#### ■ 학교운동부 환경

조사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운동부 중 합숙소를 운영하는 곳은 전체 16.6%, 지원 부서(담당자)가 있는 곳은 89.2%로 나타났다. 운동부 예산의 출처는 학교와 체육

회, 학부모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청과 시청, 구단 등의 기타 의견도 있었다. 한편, 지도자의 담당업무로는 학생선수 훈련지도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38.5%) 나타났으며,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응답한 지도자가 전체 22.9%로 나타났다.

#### ■ 지도자 고용환경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채용형태는 공개채용이 8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용관계는 기간제 계약직이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도자 계약 기간은 1년이 7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의 총액은 2,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미만인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도자의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82.1%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 ■ 지도자 고충 상황

학교운동부 상황에서 과열된 경쟁체계의 주요 요인으로 지도자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 지나친 경기실적 강요, 훈련비/포상금 등 경쟁을 강요하는 시스템의 문제 순으로 응답하였다.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갑질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49.4%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갑질 주체로 교장과 교감, 부장교사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본인이 경험한 갑질이 선수들의 인권침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7%로 나타났다. 한편, 운동부 지도자의 주된 고충으로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 선수 확보와 진학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고, 지도자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서 신분의 안정과 현실적인 임금, 공정한 경쟁구조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 지도자 인권 인식과 인권옹호자의 역할

지도자로서 선수에게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할 스포츠 인권으로 폭력 및 성폭력 근절, 학습권 보장, 휴식시간 보장, 단체 기합 근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소 폭력 및 성폭력 근절 노력, 불필요한 신체접촉 방지 노력, 언어적 폭력, 음주 혹은 흡연, 학생 관찰, 운동 외적 행동 제한, 선수 고충 및 지도 상담, 공정한 출전기회 제공, 차별하지 않으려는 노력, 인성에 대한 관심, 선수 동기부여, 다양한 지도방법 도입, 학습권 보장, 학생활동 참여 보장, 갈등 대처를 위한 노력, 소통 및 선수관리, 체계적 훈련, 리더십 증진, 재교육 참석 등 응답자들은 평소 인권옹호자의 역할에 대해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소속/임금수준(연봉)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차이

지도자 성별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인권옹호자의 역할 문항 중 주요 문항을 설정하고, 독립표본 t-검정을 한 결과 성별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문항 중 선수 앞 음주 및 흡연 문항에서 남성지도자(M=1.500)가 여성지도자(M=1.17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때 t값이 6.291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도자 소속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문항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일원 분산분석 결과 소속에 따른 선수 앞 음주 및 흡연 문항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지도 집단(M=1.196), 중학교 지도 집단(M=1.462), 고등학교 지도 집단(M=1.570), 대학교 지도 집단(M=1.800)간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15.191,  $p < .001$ ). 소속에 따른 운동외적 행동 제한 문항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지도 집단(M=2.120), 중학교 지도 집단(M=2.560), 고등학교 지도 집단(M=2.521), 대학교 지도 집단(M=2.066)간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6.322,  $p < .001$ ). 소속에 따른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 보장 문항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지도 집단(M=4.594), 중학교 지도 집단(M=4.335), 고등학교 지도 집단(M=4.387), 대학교 지도 집단(M=4.577)간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5.059,  $p < .01$ ). 소속에 따른 학생생활 전반에 참여 독려 문항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지도 집단(M=4.753), 중학교 지도 집단(M=4.485), 고등학교 지도 집단(M=4.408), 대학교 지도 집단(M=4.577)간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8.334,  $p < .001$ ). 소속에 따른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재교육 참석 노력 문항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지도 집단(M=4.607), 중학교 지도 집단(M=4.433), 고등학교 지도 집단(M=4.387), 대학교 지도 집단(M=4.422)간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3.299,  $p < .05$ ).

지도자 임금수준(연봉)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문항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지도자 임금수준(연봉)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문항 중 선수 앞 음주 및 흡연 문항에서 3,000만원 이상 받는 지도자(M=1.553)가 3,000만원 미만 받는 지도자(M=1.38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때 t값이 -2.726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p < .01$ ). 지도자 임금수준(연봉)에 따른 인권옹호자의 역할 문항 중 운동외적 행동 제한 문항에

서 3,000만원 이상 받는 지도자(M=2.593)가 3,000만원 미만 받는 지도자(M=2.25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때 t값이 -3.228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01).

## ○ 학교운동부 인권 친화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 ■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지도자 급여에서 학부모의 지원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들이 정규직 혹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고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평가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즉, 경기실적 위주의 평가방식을 탈피하고 책임용 기준에 인권 친화적 활동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성적과 신분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지도자들을 보호해줄 장치가 필요하다.

### ■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감수성 제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를 위해 소규모 교육 형태로의 전환과 강의 형태를 탈피하여 토론이나 참여식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내용의 변화가 요구된다. 단순한 정보전달 차원을 넘어선 지도자의 인권감수성 제고와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 내용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

### ■ 학교운동부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학교운동부를 구성하는 구성원과 관리, 감독 주체 단체 상호 간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목적으로는 첫째, 학교운동부 인권 보호를 위한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의 강화이다.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장의 공개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학교운동부 인권 보호 노력의 지속성 확보 및 강화이다.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은 학생선수가 인지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학생선수와 지도자에게 본인이 속한 운동부 현장의 인권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인권 보호 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학교운동부 현장의 인권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동기부여 기능 강화이다. 학교운동부 인권실태 평가와 이를 통한 상벌제도 도입으로 현장 구성원들이 인권 현황을 상기하고, 개선 노력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 2. 결론

스포츠 현장의 인권상황을 바라보는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인식 차이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5만7,557명의 초·중·고 학생선수 중 9,035명이 언어폭력을, 8,440명이 신체폭력을 경험했으며, 2,212명이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응답자 수와 비교할 때 약 34.5%로 3명 중 1명이 넘는다. 그리고 주요 가해자로 지도자(75.5%)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응답한 지도자들은 인권옹호자의 역할과 관련한 모든 문항에서 인권옹호자의 역할에 긍정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는 지도자가 수행하고 있는 인권 친화적 노력과 학생선수가 체감하는 인권 친화적 노력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재 학생선수는 지도자의 훈련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정도로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직 지도자의 상당수는 수동적이고, 비 주도적인 환경에서 선수 생활을 경험한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현재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 친화적 노력과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학생선수가 변화하는 속도에 발맞추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와 지도자 인권실태 조사의 대치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현재 학생선수의 사고방식, 성향, 인권 감수성 정도 등을 이해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도자가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선수 이탈과 같은 문제행동 시 지도자의 간섭 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학부모가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동 교육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신욱(2007). 학교운동부 코치의 보수 격차 요인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0(3), 377-390.
- 김동규, 구강본(2009). 스포츠실천의 진보: 상생과 소통. 한국체육철학회지, 17(1), 51-69.
- 김동규, 김현수(2018). 인권지향적 스포츠맨십의 정초: 세계인권선언의 적용. 한국체육철학회지, 26(2), 59-72.
- 김동현, 윤양진(2011).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 과제. 스포츠와 법, 14(1), 107-128.
- 김택천(2007). 학교체육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학교체육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대한체육회(201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선수지도 매뉴얼. 서울: 대한체육회.
- 류태호(2004). 학원 스포츠 코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코칭능력개발원, 20(1), 8-11.
- 박민기(2019. 11. 07). “학생선수 34%, 언어·신체·성폭력 피해”...인권위 조사. 인터넷 뉴스. [https://news.v.daum.net/v/20191107145324086?fbclid=IwAR0lg8GX-gWOPZZ5eZJ6Rr5aDma9LlN7h1EjhjPXTG\\_3-sEAtH3Su4RfgY](https://news.v.daum.net/v/20191107145324086?fbclid=IwAR0lg8GX-gWOPZZ5eZJ6Rr5aDma9LlN7h1EjhjPXTG_3-sEAtH3Su4RfgY).
- 송남석(2016).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친화적 역할과 선수관리 및 역량강화 수행에 관한 연구-스포츠 인권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스포츠혁신위원회(2019). 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문.
- 이명훈, 이근모, 이남미(2003). 중등학교 체육특기자들의 중도탈락 영향 요인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1), 157-172.
- 이창훈, 유성연, 윤우석(2018).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 조사.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건상(2015). 학교운동부 지도자 간 갈등에 관한 연구: 개인종목 감독교사와 코치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4(5), 89-103.
- 함은주(2019). 사람 중심의 스포츠: 포용국가와 스포츠 인권. 스포츠과학, 146, 16-21.

---

---

부 록

---

---



##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 실태 조사

### ◆ 연구목적과 내용 설명 및 설문 협조

먼저,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과제임을 밝힙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의 **인권 상황과** 인권옹호자 역할수행을 위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운동부 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자의 인권 보호 및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규명하며, 이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귀하께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처해있는 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인권옹호자로서의 필요한 역할 등을 질문합니다.** 귀하께서 각 문항을 신중하게 읽으시고 정확하게 답해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문내용에 대한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답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문항이나 신변이 노출되는 정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5장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하는 과정 중 작성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자료에서 제외됩니다.

설문 응답은 5분 내외 소요될 것입니다. 응답 중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 경일대학교 김상범 교수 / ☎ 053-600-5906, e-mail : spokim@kiu.kr  
 조사 문의 : (주)마이크로밀엠브레인 권여진 차장 / ☎ 02-3406-3876, e-mail :  
 yjkwon@embrain.com

## I.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협회에 최초로 등록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귀하의 지도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년 (    )개월

4. 귀하는 현재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5. 귀하의 소속 학교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① 수도권(서울 및 경기도 일원)   ② 강원권   ③ 충청권   ④ 전라권   ⑤ 경상권   ⑥ 제주권

6.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 ① 부장   ② 감독   ③ 코치   ④ 트레이너   ⑤ 사감   ⑥ 기타(            )

7. 귀하의 지도 종목은 무엇입니까?

- |         |             |           |         |               |
|---------|-------------|-----------|---------|---------------|
| ① 가라테   | ② 검도        | ③ 골프      | ④ 궁도    | ⑤ 근대5종        |
| ⑥ 농구    | ⑦ 당구        | ⑧ 댄스스포츠   | ⑨ 럭비    | ⑩ 레슬링         |
| ⑪ 롤러스포츠 | ⑫ 루지        | ⑬ 바둑      | ⑭ 바이애슬론 | ⑮ 배구          |
| ⑯ 배드민턴  | ⑰ 보디빌딩      | ⑱ 복싱      | ⑲ 볼링    | ⑳ 봅슬레이/스켈레톤   |
| ㉑ 빙상    | ㉒ 사격        | ㉓ 산악      | ㉔ 세팍타크로 | ㉕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
| ㉖ 수영    | ㉗ 수중-핀수영    | ㉘ 스쿼시     | ㉙ 스키    | ㉚ 승마          |
| ㉛ 씨름    | ㉜ 아이스하키     | ㉝ 야구/소프트볼 | ㉞ 양궁    | ㉟ 에어로빅        |
| ㊱ 역도    | ㊲ 요트        | ㊳ 우수      | ㊴ 유도    | ㊵ 육상          |
| ㊶ 자전거   | ㊷ 정구        | ㊸ 조정      | ㊹ 철인3종  | ㊺ 체조          |
| ㊻ 축구    | ㊼ 카누        | ㊽ 카바디     | ㊾ 컬링    | ㊿ 탁구          |
| ① 태권도   | ② 택견        | ③ 테니스     | ④ 펜싱    | ⑤ 하키          |
| ⑥ 핸드볼   | ⑦ 기타 (    ) |           |         |               |

※ 다음의 질문에 대해 '귀하의 현재 소속 학교운동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II. 학교운동부 환경

8. 학교운동부는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운영한다. → 8-1로 이동                      ② 운영하지 않는다. → 9로 이동

8-1. (8=①) 지도자가 합숙소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 ① 상주한다.    ② 상주하지 않는다.

8-2. (8=②) 운동부 지도자가 합숙소 사감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까?

- ① 합숙소 사감으로 계약해서, 지도와 사감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② 합숙소 사감으로 계약되어있지는 않지만, 사감의 업무를 겸하고 있다.  
 ③ 사감으로 계약되지도 않았고, 사감의 업무도 하지 않는다.

9. 학교운동부는 지원 부서(담당자)가 있습니까?

(예 : 체육부 혹은 운동부 운영부장교사 등의 존재 여부)

- ① 운동부 지원부서(담당자)가 있다.  
 ② 운동부 지원부서(담당자)가 없다.

10.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예산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교                      ② 학부형                      ③ 체육회                      ④ 기타 (                      )

11.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 ① 학생선수 훈련지도 업무(훈련, 대회출전 등)만 담당  
 ② 학생선수 훈련지도 업무와 운동부 관련 행정업무만 담당  
 ③ 학생선수 훈련지도, 합숙소 생활관리 업무를 담당  
 ④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업무를 담당

12.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 등의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IV. 지도자 고충 상황

21. 학교운동부 상황에서 과열된 경쟁체계의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짧은 계약 기간과 쉬운 실직 환경)
- ② 지나친 경기실적 강요
- ③ 지도와 훈련에 대한 학교 및 동문회의 지나친 간섭
- ④ 지도와 훈련에 대한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 ⑤ 훈련비 지원, 포상금 지급 등 경쟁을 강요하는 시스템의 문제(소년체전, 전국체전 선발과 교육청 지원금 문제 등)
- ⑥ 지도자들 간의 경쟁
- ⑦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_\_\_\_\_)

22.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결정권자(교장, 부장교사 등)의 권위로 인한 피해, 즉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22-1로 이동
- ② 없다. → 23으로 이동

22-1. (22=①) 본인에게 '갑질'을 행한 사람은 주로 누구입니까?

- ① 교장 및 교감
- ② 행정실장 등 행정직원
- ③ 각 종목 부장교사(지도교사)
- ④ 동문회 임원
-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 \_\_\_\_\_)

22-2. (22=①) 본인이 경험한 '갑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직업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언행과 강압
- ② 훈련내용, 시간, 방법 등에 대한 간섭과 지시
- ③ 훈련 및 지도 업무 외 행사, 업무 지시
- ④ 주말훈련 등 필요사항에 대한 승인 거부
-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 \_\_\_\_\_)

22-3. (22=①) 본인이 경험한 '갑질'이 경쟁(승리중시, 훈련시간과 강도 증가 등)을 더욱 강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2-4. (22=①) 본인이 경험한 '갑질'이 선수들의 인권침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3. 학교운동부 지도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  
 ②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시선  
 ③ 요구사항과 평가사항의 불일치  
 (학습권 보장으로 인해 훈련시간은 감소하였으나 지도자 평가는 경기실적만 적용하는 등의 문제)  
 ④ 선수 확보와 진학의 어려움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 \_\_\_\_\_)

24.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신분의 안정과 현실적인 임금 지급  
 ② 훈련과 지도에 대한 자율권 보장  
 ③ 지도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 외 업무부여를 제한  
 ④ 공정한 경쟁구조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  
 (훈련시간, 학습시간 등 같은 조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 \_\_\_\_\_)

25. 학교운동부를 지도하면서 관계하게 되는 단체나 이해관계자(학교, 교육청, 지역 체육 단체, 학부모 등)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현재 훈련비 지원시스템으로 인한 경쟁과도 현상 및 갑질 유발 현상  
 (소년체전, 전국체전 실적에 의한 훈련비 지급 및 해당 학교 임원의 성과급 반영 시스템의 문제)  
 ② 임금의 출처가 학부모로 인한 운영 간섭의 문제  
 ③ 동문회의 운영 간섭과 압박  
 ④ 해당 종목 단체의 부적절한 관행에 의한 공정성 결여 문제(예 : 심판진 식사비 제공 관행 등)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 \_\_\_\_\_)

## V. 지도자 인권 인식과 옹호자의 역할

26. 지도자로서 선수에게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할 스포츠 인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폭력 및 성폭력 근절    ② 학습권 보장    ③ 휴식시간 보장    ④ 단체기합 근절  
⑤ 과도한 훈련 지양    ⑥ 핸드폰 사용 보장    ⑦ 선수 복장 및 두발 자유 보장

27. 평소 선수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8. 선수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인권 친화적 운동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9. 선수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할 경우 미리 동의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0. 선수들에게 언어적 폭력(욕설, 화내기, 소리 지르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표현 등)을 자주 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1. 선수들 앞에서 음주 혹은 흡연 등을 자주 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2. 저학년이 고학년 선수에게 폭력이나 괴롭힘(심부름, 빨래 등을 포함)을 당하고 있는지 평소에 주의하여 관찰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3. 선수들에게 운동 외적(복장, 두발, 핸드폰 사용 등)행동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수업참여 혹은 취침 시 핸드폰 압수, 특정 헤어스타일 강요 등)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4. 선수 개개인의 운동과 관련된 고충 및 지도상담(운동 목표, 훈련, 경기력, 선수(성)폭력, 학습권, 부상예방 및 안전관리, 일상생활 전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5. 선수에게 공정한 출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6. 선수들의 개인적 특성(외모, 성격, 기량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7. 선수를 지도할 때 선수의 인성과 관련하여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8. 선수 스스로의 자율적인 운동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9. 선수들이 운동에 흥미를 가지고 지속할 수 있도록 평소에 다양한 지도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0. 선수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1. 선수들이 학생생활 전반(수업,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에 빠지지 않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2. 선수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도자와 선수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대처(훈련방식, 경기출전 등)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3. 선수와 소통 및 선수관리(운동부 분위기, 성원 간 관계, 갈등 상황 등)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4. 주간, 월간,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5. 선수에게 비전 및 방향 제시와 신뢰감 증대를 위한 리더십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6. 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재교육(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실태와 인권옹호자의 역할

| 인쇄일 | 2019년 10월  
| 발행일 | 2019년 10월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02)2125-9963  
| F A X | 02)2125-0934  
| 제 작 | (주)두루행복한세상 (070) 4659-0803

ISBN 978-89-6114-753-8 93370

비매품